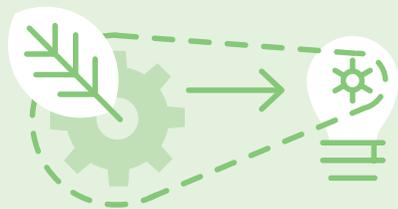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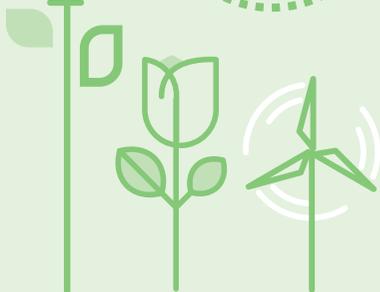


2021
외국투자가를 위한
**환경정책
가이드**



CONTENTS

I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대기환경	006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007
2. 비산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026
3.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031
4.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운영	037
 물환경	042
5.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043
6. 비점오염원 설치 및 운영	057
 생활환경	063
7.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064
8. 악취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071
 잔류성오염물질, 토양, 폐기물	076
9.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077
10.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및 운영	082
1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089
 통합환경허가	102
12. 배출시설등 통합 허가 및 운영	103

II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거나 취급하는 기업

1. 화학물질 등록 및 신고	118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및 승인	133
3.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승인	140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인·허가 및 준수사항	154





I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대기환경

- | | |
|--------------------------|-----|
|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 007 |
| 2. 비산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 026 |
| 3.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 031 |
| 4.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운영 | 037 |

물환경

- | | |
|-------------------|-----|
| 5.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 043 |
| 6. 비점오염원 설치 및 운영 | 057 |

생활환경

- | | |
|-----------------------|-----|
| 7.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 064 |
| 8. 악취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 071 |

잔류성오염물질, 토양, 폐기물

- | | |
|--------------------------|-----|
| 9.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 077 |
| 10.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및 운영 | 082 |
| 1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 089 |

통합환경허가

- | | |
|----------------------|-----|
| 12. 배출시설등 통합 허가 및 운영 | 103 |
|----------------------|-----|

대기환경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2. 비산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3.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4.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운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I



01 개요

-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하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사·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대기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로 하고 해당 시설을 설치 할 때에는 동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대기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 대기배출시설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가동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환경기술인을 임명 하여야 합니다
- ◆ 대기배출시설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해당 시설을 항상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동 시설의 운영상황을 사실대로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대기배출시설 설치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 측정기기 부착 및 환경기술인 임명 • 대기배출시설 등 가동개시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 대기배출시설 등 적정 운영
- 대기배출시설 등 운영상황 기록·보존
- 측정기기 부착 및 적정 운영·관리
- 자가측정
- 환경기술인 교육

02 용어 설명

용어	내용
대기오염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이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유해성대기 감시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오염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별표 1의2)
특정대기 유해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3)
대기오염 방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연소조절에 의한 방법 등으로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4)

03 대기배출시설 설치

◆ 가.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

◆ 허가 및 신고대상

구분	허가 및 신고대상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하는 대기배출시설 •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²⁾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위의 허가대상이 아닌 대기배출시설로서 5종 사업장에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은 제외)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대상을 제외한 모든 대기배출시설

◆ 제출 서류

- 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서/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원료(연료를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 대기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내역서
- 대기오염방지시설 일반도
- 대기오염방지시설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 서류(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및 별표 8의2

2)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고시(환경부고시 제2018-23호)



- 자기방지사설 설계·시공 관련 서류(자기방지사설을 설계·시공하려는 경우)
- 공동 방지사설 설치 관련 서류(공동 방지사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저황유 외 연료 사용 관련 서류(저황유 외 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
-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 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방지사설의 설치 명세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동 배출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해당 되는 경우)

◆ 나. 대기배출시설 설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대상

구분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대상	신청(신고)시기
변경 허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대기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 이상 증설(대기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	변경전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 ³⁾ 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하는 대기배출시설의 경우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대기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 증설(대기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	변경전
	설치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은 대기배출시설의 용도 추가	변경전
변경 신고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대기배출시설을 증설, 교체 또는 폐쇄(10% 미만으로 증설·교체·폐쇄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대기오염방지 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이내이고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변경전
	대기배출시설에서 허가받거나 신고한 대기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유 발생일 부터 30일
	대기오염방지시설 증설, 교체 또는 폐쇄	변경전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 변경(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 등은 제외)	변경전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사유 발생일 부터 2개월
	대기배출시설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임대	사유 발생일 부터 30일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 (신고)사항 및 일일조업시간 변경	변경전

◆ 제출 서류

-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및 별표 8의2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대기오염방지시설 일반도 및 유지관리계획서(대기오염방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 서류(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 원료(연료를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
-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 서류(자가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려는 경우)
- 공동 방지시설 설치 관련 서류(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저황유 외 연료 사용 관련 서류(저황유 외 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
-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 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동 배출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해당 되는 경우)

◆ 참고 | 사업장 분류

- 환경부장관은 대기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 분류하여야 함(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
- 사업장 분류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의3)

종별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1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이상인 사업장
2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이상인 사업장
3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이상인 사업장
4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이상인 사업장
5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미만인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임

◆ 참고

- **대기오염방지사설 설치 면제**(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4항, 제26조제1항 단서)
 - 대기오염방지사설 설치 면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방지사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이 경우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을 할 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자가방지사설 설계·시공**(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4항, 제28조 단서)
 - 대기오염방지사설은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설계·시공하여야 하나, 사업자 스스로 방지사설을 설계·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이 경우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을 할 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 방지사설 설치**(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4항, 제29조제1항)
 - 산업단지나 그 밖에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대기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공동으로 대기오염방지사설을 설치할 수 있음
 - 이 경우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을 할 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저황유 외 연료 사용**(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4항, 제41조제3항 단서)
 -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대기배출시설로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
 - 이 경우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을 할 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고체연료 사용 승인**(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4항, 제42조 단서)
 - 고체연료 사용제한 지역에 있는 사업자에게는 고체연료 사용이 금지되나, 고체연료를 사용하여도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대기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시설로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한하여 고체연료 사용이 허용됨
 - 이 경우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을 할 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변경)신고**(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제1항 단서, 제60조제2항 단서)
 - 특별대책지역 등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이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 제출로 이를 갈음할 수 있음
-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제1항 및 제5항)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대기배출시설에 관련된 다음 법령의 허가나 변경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변경신고
 - 위와 같은 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다.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고 해당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 대기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 다만,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되는데, 사전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단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기준

- 대기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대기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 그 밖에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으로 대기오염물질의 적정 처리가 가능한 경우

◆ 제출 서류

- 대기배출시설의 기능·공정·사용원료(부원료 포함) 및 연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대기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

- 산업단지 그 밖의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공동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사전에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 대표자가 관련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 제출 서류

- 공동 방지시설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 사업장별 대기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 예측서
- 사업장별 원료사용량과 제품생산량을 적은 서류와 공정도
-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04 대기배출시설 운영

◆ 가. 측정기기 부착

- 대기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 대기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제4항 및 별표 2, 제5항 및 별표 3

◆ 측정기기 종류

- ① 적산전력계
- ② 굴뚝 자동측정기기(유량·유속계, 온도측정기 및 자료수집기 포함)(이하 '굴뚝 자동측정기기')

◆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 등

- ① 적산전력계
 - 부착대상 사업장 : 1종부터 5종까지 모든 사업장
 - 부착대상 시설 : 대기배출시설에 설치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 다만, 다음 시설은 제외
 -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배출구와 연결된 대기오염방지시설
 - 대기오염방지시설과 대기배출시설이 같은 전원설비를 사용하는 등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지 아니하여도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대기오염방지시설
 - 원료나 제품을 회수하는 기능을 하여 항상 가동하여야 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
 - 부착방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참조
- ② 굴뚝 자동측정기기
 - 부착대상 사업장 : 1종·2종·3종 사업장
 - 부착대상 대기배출시설 및 측정항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참조
 - 부착면제 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참조

- 부착 시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 가목
 -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부착하여야 함. 다만, 같은 사업장에서 새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구가 10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동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모두 부착
- 부착 유예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 다목 참조

◆ 나. 환경기술인 임명

- 대기배출시설과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제2항 및 별표 10

◆ 환경기술인 임명기간

- 대기배출시설을 최초로 설치한 경우 :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
- 환경기술인을 교체·임명하는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다만, 환경기사 1급 또는 2급 이상의 자격 소지자를 임명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채용이 곤란한 경우 30일 이내 4종·5종사업장의 자격 기준에 준하여 임명 가능)

◆ 사업장별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사업장 구분	자격기준
1종사업장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2종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3종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 업무 종사자 1명 이상
4종사업장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수리된 자 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수리된 자가 해당 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5종사업장	



❖ 비교

- 1) 1종사업장과 2종사업장 중 1개월 동안 실제 작업한 날 기준 1일 평균 17시간 이상 작업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환경기술인을 2명 이상 두어야 함. 이 경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 자격자로 대체할 수 있음
- 2) 공동 방지시설에서 각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함
- 3) 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함
- 4)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사업장과 공동 방지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사업장은 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음
- 5) 일반보일러만 설치된 사업장과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은 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음
- 6) 대기환경기술인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환경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겸임할 수 있음

◆ 다. 대기배출시설 등 가동개시신고

- 대기배출시설이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하거나 대기배출시설의 변경⁴⁾을 완료하여 그 시설을 가동하려면 시·도지사에게 가동개시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5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 대상 규모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배출구별 대기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0이상 증설

◆ 제출 서류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4) 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만 해당

- 가동개시신고한 시설 중에서 일부 시설은 가동개시일로부터 30일간 시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2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

◆ 시운전 가능 시설

- 황산화물제거시설을 설치한 대기배출시설
- 질소산화물제거시설을 설치한 대기배출시설
- 그 밖에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한 후 상당한 기간 시운전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대기배출시설

◆ 라. 대기배출시설 등 적정 운영

- 대기배출시설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해당 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관련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

◆ 대기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 운영시 금지행위

-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대기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외)
-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외)
- 부식이나 마모로 인해 대기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대기배출시설이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
- 대기오염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
- 그 밖에 대기배출시설이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



- 아울러, 대기배출시설과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사업장 규모별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 1종·2종·3종 사업장의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⁵⁾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함. 다만,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모든 배출구에 대한 측정결과를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로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자료전송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음
- 4종·5종사업장의 경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⁶⁾(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함

◆ 기록 사항

- 시설의 가동시간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 시설 관리 및 운영자
- 그 밖에 시설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마. 측정기기 적정 운영·관리

- 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측정기기 운영시 금지행위(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3항)

- 대기배출시설이 가동될 때에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경우

5)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8-43호)

6)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 또는 테이프·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 가능

-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없이 방지
- 측정기기를 고의로 훼손
-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

◆ **측정기기 운영·관리 기준**(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4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별표 9)

- 적산전력계 운영·관리 기준
 -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적산전력계 부착
 - 적산전력계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
-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 기준
 -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구조 및 성능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맞도록 유지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고, 동 법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도검사 결과를 관제센터가 알 수 있도록 조치(동 법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맞는 자료수집기 및 중간자료수집기의 경우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
 - 굴뚝 자동측정기기에 의한 측정자료를 관제센터에 상시 전송
 - 굴뚝배출가스 온도측정기를 새로 설치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는 국가 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을 받아야 하며, 그 기록을 3년 이상 보관(다만, 소각시설에 설치하는 온도측정기 중 최종연소실출구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 측정기의 경우에는 KS규격품을 사용하여 교정을 갈음)

◆ **바. 자가측정**

-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할 때는 동 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자가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이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및 별표 11

◆ 자가측정 횟수 및 측정항목

- 측정횟수는 배출구 규모, 관제센터에 측정결과 전송여부에 따라 다름

배출구 구분		측정횟수			측정항목
		관제센터 미전송 사업장 배출구	관제센터 자동전송 사업장 중 굴뚝 자동측정기기 미설치 배출구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	방지시설 전·후단 측정	
제1종	먼지·황산화물 · 질소산화물 연간 80톤이상 발생	매주 1회이상	2주마다 1회이상	매월 1회이상	대기배출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는 제외
제2종	먼지·황산화물 · 질소산화물 연간 20톤이상 발생	매월 2회이상	매월 1회이상	2개월마다 1회이상	
제3종	먼지·황산화물 · 질소산화물 연간 10톤이상 발생	2개월마다 1회이상	2개월마다 1회이상	분기마다 1회이상	
제4종	먼지·황산화물 · 질소산화물 연간 2톤이상 발생	반기마다 1회이상	반기마다 1회이상	반기마다 1회이상	
제5종	먼지·황산화물 · 질소산화물 연간 2톤미만 발생	반기마다 1회이상	반기마다 1회이상	반기마다 1회이상	

◆ 자가측정 면제, 횟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참조

- 측정대행업자에게 자가측정을 하게 하려는 경우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자가측정한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

◆ 금지행위

-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 제출시기

- 상반기 측정결과(7.31까지), 하반기 측정결과(다음해 1월 31일까지)

◆ 제출서류

- 반기별 자가측정결과 보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 사본



◆ 참고 |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 설치허가 및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방지시설 설치·개선 또는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

■ 적용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권역	지역구분	지역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중부권	대전광역시	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부권	광주광역시	전 지역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동남권	부산광역시	전 지역
	대구광역시	전 지역
	울산광역시	전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TSP) (『대기관리구역법』 제9조제2항 제8호)

■ 설치허가(신고) 대상

• 신설·증설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 사업장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

연간 배출량* 질소산화물(NOx) 4톤 초과, 황산화물(SOx) 4톤 초과, 또는 먼지(TSP) 0.2톤 초과 시 (『대기관리구역법 시행령』 별표 2)

- 연간 배출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의3에 따른 1·2·3종 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말함

• 배출량 증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신고)를 받은 자가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비산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이 개 요

- ◆ 특정 업종에서 굴뚝 자동측정기가 부착된 굴뚝이 아닌 대기중에 대기오염 물질을 직접 배출(이하 '비산배출')하는 공정 및 설비 등의 시설(이하 '비산배출 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 비산배출시설 설치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비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비산배출되는 유해물질의 저감을 위하여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기관 으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비산배출시설 설치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



비산배출시설 운영

-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준수
- 비산배출시설 정기점검

02 비산배출시설 설치

◆ 가.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

-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유역 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의2 및 별표 9의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의2제1항

◆ 비산배출 저감 대상 업종

분류	업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원유 정제처리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합성고무 제조업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 제철업 • 제강업 • 냉간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원료를 가늘게 늘이는 공정)제품 제조업 • 강관 제조업 • 강관 가공품 및 연결구류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제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 축전지 제조업 •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분류	업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선 건조업 •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 기타 선박 건조업. 다만, 철강 및 합성수지를 제외한 그 밖의 재료로 비철금속선, 복선 등 항해용 선박을 건조하는 사업장은 제외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이프라인 운송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품 보관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기구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다만, 금속제 유금(clasp), 유금이 붙은 프레임 또는 금고를 제조하는 사업장은 제외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물, 편조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펄프, 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층, 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다만, 다음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디오 및 텔레비전 수상기용 전자관 - 산업용 및 기타 특수목적용 전자관 및 부분품 - 전자접속카드(인터페이스 카드) - 인쇄회로사진원판(포토마스크)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용 신품(新品)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현가장치(懸架裝置) 제조업 •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 그 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 자동차 중고 부품 제제조업. 다만, 자동차의 중고 부품으로 엔진, 차체, 전기장치 및 관련 부품을 일련의 제조 과정을 거쳐 신품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사업장 제외



- 1) 위 표의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업종임
- 2)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은 휘발유를 보관·출하하는 저유소에 한정하여 적용

◆ 제출 서류

-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 제품생산 공정도 및 비산배출시설 설치명세서
- 비산배출시설별 관리대상물질 명세서
-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호가목3)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적용 제외 시설의 목록

◆ 나.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변경신고

- 비산배출시설 설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비산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려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2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2제3항 및 제4항

◆ 변경신고대상

구분	변경신고대상	신고시기
변 경 신 고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비산배출시설 규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별 분류가 동일한 비산배출시설의 시설 용량의 합계 또는 시설 개수의 누계) 10퍼센트 이상 변경	변경전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 변경	변경전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변경 사유 발생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비산배출시설 임대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 제출 서류

-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변경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 4서식)
-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 원본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03 비산배출시설 운영

-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기중에 비산배출되는 유해물질의 저감을 위하여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5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제2항 및 별표 10의2

◆ 시설관리기준의 구성(공통기준, 업종별 관리대상물질 및 업종별 시설관리기준)

- (공통기준) 일반기준, 기록기준 및 보고기준
- (업종별 관리대상물질) 업종별(Ⅰ~Ⅳ업종) 적용물질 및 공통 적용물질
- (업종별 시설관리기준) 업종별(Ⅰ~Ⅳ업종) 배출시설별 세부 기준

- 아울러, 시설관리기준의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점검기관으로부터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시설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6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제5항

◆ 정기점검의 내용, 주기 및 방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7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제3항 및 별표 10의3 참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I



01 개요

-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 지역에서 동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의 장(이하 '대도시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고 동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여부 및 농도 등을 검사·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설치 신고



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방지시설 등 설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여부 등 측정·검사

02 용어 설명

용어	내용																																													
휘발성 유기화합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⁷⁾하는 것(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 제2항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 억제 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5-125호)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업종)</th> <th colspan="2">배출시설</th> </tr> <tr> <th>시설명</th> <th>규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석유정제 및 석유 화학제품제조업</td> <td>원유정제 등 제조시설</td> <td>모든 시설</td> </tr> <tr> <td>저장시설</td> <td>저장용량 40m³ 이상</td> </tr> <tr> <td>출하시설</td> <td>모든 시설</td> </tr> <tr> <td rowspan="2">저유소</td> <td>저장시설</td> <td>저장용량 20m³ 이상</td> </tr> <tr> <td>출하시설</td> <td>모든 시설</td> </tr> <tr> <td rowspan="2">주유소</td> <td>저장시설</td> <td>저장용량 20m³ 이상</td> </tr> <tr> <td>주유시설</td> <td>저장시설 저장용량 20m³ 이상</td> </tr> <tr> <td>세탁시설⁹⁾</td> <td>세탁시설</td> <td>처리용량 30kg 이상(합계)</td> </tr> <tr> <td rowspan="5">유기용제 및 페인트제조업</td> <td>반응시설</td> <td>용적 3m³ 이상</td> </tr> <tr> <td>혼합시설</td> <td>용적 3m³ 이상</td> </tr> <tr> <td>희석신나 제조시설</td> <td>용적 5m³ 이상 또는 동력 50마력 이상</td> </tr> <tr> <td>유기용제, 유기용제 함유물질 유류저장시설</td> <td>저장용량 10m³ 이상</td> </tr> <tr> <td>페인트저장시설</td> <td>저장용량 50m³ 이상</td> </tr> <tr> <td rowspan="4">선박 및 대형철구조물 제조업 (10m×10m 이상 대형구조물에 한함)</td> <td>세정시설(탈지시설 포함)</td> <td>용적 1m³ 이상</td> </tr> <tr> <td>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td> <td>용적 5m³ 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td> </tr> <tr> <td>유기용제, 유기용제 함유 저장시설</td> <td>저장용량 10m³ 이상</td> </tr> <tr> <td>유류저장시설</td> <td>저장용량 10m³ 이상</td> </tr> </tbody> </table>	구분(업종)	배출시설		시설명	규모	석유정제 및 석유 화학제품제조업	원유정제 등 제조시설	모든 시설	저장시설	저장용량 40m ³ 이상	출하시설	모든 시설	저유소	저장시설	저장용량 20m ³ 이상	출하시설	모든 시설	주유소	저장시설	저장용량 20m ³ 이상	주유시설	저장시설 저장용량 20m ³ 이상	세탁시설 ⁹⁾	세탁시설	처리용량 30kg 이상(합계)	유기용제 및 페인트제조업	반응시설	용적 3m ³ 이상	혼합시설	용적 3m ³ 이상	희석신나 제조시설	용적 5m ³ 이상 또는 동력 50마력 이상	유기용제, 유기용제 함유물질 유류저장시설	저장용량 10m ³ 이상	페인트저장시설	저장용량 50m ³ 이상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 제조업 (10m×10m 이상 대형구조물에 한함)	세정시설(탈지시설 포함)	용적 1m ³ 이상	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	용적 5m ³ 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	유기용제, 유기용제 함유 저장시설	저장용량 10m ³ 이상	유류저장시설	저장용량 10m ³ 이상
구분(업종)	배출시설																																													
	시설명	규모																																												
석유정제 및 석유 화학제품제조업	원유정제 등 제조시설	모든 시설																																												
	저장시설	저장용량 40m ³ 이상																																												
	출하시설	모든 시설																																												
저유소	저장시설	저장용량 20m ³ 이상																																												
	출하시설	모든 시설																																												
주유소	저장시설	저장용량 20m ³ 이상																																												
	주유시설	저장시설 저장용량 20m ³ 이상																																												
세탁시설 ⁹⁾	세탁시설	처리용량 30kg 이상(합계)																																												
유기용제 및 페인트제조업	반응시설	용적 3m ³ 이상																																												
	혼합시설	용적 3m ³ 이상																																												
	희석신나 제조시설	용적 5m ³ 이상 또는 동력 50마력 이상																																												
	유기용제, 유기용제 함유물질 유류저장시설	저장용량 10m ³ 이상																																												
	페인트저장시설	저장용량 50m ³ 이상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 제조업 (10m×10m 이상 대형구조물에 한함)	세정시설(탈지시설 포함)	용적 1m ³ 이상																																												
	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	용적 5m ³ 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																																												
	유기용제, 유기용제 함유 저장시설	저장용량 10m ³ 이상																																												
	유류저장시설	저장용량 10m ³ 이상																																												

7) 휘발유, 벤젠 등 37개 제품 및 물질 지정·고시(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고시, 환경부고시 제2015-181호)

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의2에서 정하는 비산배출 저감 대상 업종에서 사용하는 시설은 제외

9) 물세탁기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이 없는 기기는 합계에서 제외

용어	내용		
	구분(업종)	배출시설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⁸⁾	자동차 제조업	유류, 유기용제 및 유기용제 함유 물질 저장시설 저장용량 10m ³ 이상	
	기타 제조업 ¹⁰⁾	세정시설(탈지시설 포함)	용적 1m ³ 이상
		유류, 유기용제 및 유기용제 함유 물질 저장시설	저장용량 10m ³ 이상
	폐기물보관시설 (폐유, 폐유기용제 및 폐농약)	보관시설	저장용량 10m ³ 이상(합계)
		파쇄·분쇄·절단시설	동력 20마력 이상
		소각시설	1일 처리능력 10톤 이상
		고온열분해시설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
		건류시설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
		용융시설	동력 10마력 이상
		증발·농축·반응시설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
		정제시설	1일 20kℓ 이상 ¹¹⁾
		유수분리시설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
		응집침전시설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
	건조시설	1일 처리용량 0.15m ³ 이상	



03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 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신고

- 특별대책지역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신고 대상 지역에서 동 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및 제59조의2제1항

10)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16,20(화학 및 불꽃제품 제조업만 해당), 24,25,26,27,28(가정용기기 제조업,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만 해당),29,32,31(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전투용 차량 제조업만 해당),33에 해당하는 제조업

11) 고온열분해 또는 감압증류는 1일 24시간 기준으로, 기타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 지역

구분	대상 지역			
특별대책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광역시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 •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 			
<p style="text-align: center;">대기관리권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 	권역	지역구분	지역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중부권	대전광역시	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정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남부권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광주광역시	전 지역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동남권	부산광역시	전 지역	
		대구광역시	전 지역	
		울산광역시	전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위의 지역 외에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 ¹²⁾ 하는 지역 ¹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용인시, 경기 화성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 제출 서류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억제·방지시설 설치명세서

12)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규제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16-74호)

13) 동 지역은 저유소의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과 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만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 참고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대기배출 시설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대상 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설치 신고서의 제출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의 제출 같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제1항 단서)

◆ 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변경신고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려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2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 및 제2항

◆ 변경신고대상

구분	변경신고대상	신고시기
변경 신고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설	변경전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 방지시설 변경	변경전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폐쇄	변경전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또는 배출·억제 방지시설 임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 제출 서류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증명서 원본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참고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의 제출을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또는 설치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한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의 제출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의 제출 같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단서)

◆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 방지시설 설치 등 조치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5항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 및 별표 16 참조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 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5-125호) 참조

03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 ◆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여부 및 농도 등을 검사·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0항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검사·측정결과 기록·보존에 관한 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10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 및 별표 16 참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운영



01 개요

- ◆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이하 '비산먼지 발생사업')으로서 신고대상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아울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운영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설치 등 조치

02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운영

◆ 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전에 관련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I



◆ 관련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13, 제58조제1항

◆ 신고대상 비산먼지 발생사업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사업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멘트제조업·가공 및 저장업 • 석회제조업 • 콘크리트제품제조업 • 플라스터 제조업
비금속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사석공업(야적면적 100㎡ 이상 골재보관·판매업 포함) • 석탄제품제조업 및 아스콘제조업 • 내화오염제품제조업 •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 일반도자기제조업 • 구조용 비내화 오염제품제조업 •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 건설폐기물처리업
제1차 금속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주조업 • 제철 및 제강업 •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비료제조업 • 배합사료제조업 • 곡물가공업(임가공업 포함)
건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축조공사(건축물의 증·개축, 재축 및 대수선 포함, 연면적 1,000㎡ 이상) • 토목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물의 용적합계가 1,000㎡ 이상 또는 면적 1,000㎡ 이상 또는 총연장 200m 이상 - 굴정(구멍 뚫기) 공사의 경우 총 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 토사량이 200㎡ 이상 • 조경공사(면적 합계 5,000㎡ 이상) • 지반조성공사 중 건축물해체공사(연면적 3,000㎡ 이상), 토공사 및 정지공사(면적합계 1,000㎡ 이상),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공사의 경우 흙쌓기(성토) 등을 위하여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거나 농지전용 등을 위한 토공사, 정지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면적 합계 1,000㎡ 이상 • 도장공사(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 외부 도장공사) • 그 밖에 위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상기 공사 규모 이상인 공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사업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고철 운송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고철의 운송업
운송장비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선제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 • 선박구성부품제조업(선실블록제조업만 해당) • 그 밖에 선박건조업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업 • 부두, 역구내 및 기타 지역의 저탄사업 •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저탄면적 100㎡ 이상)
고철·곡물·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상화물취급업
금속제품 제조 가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처리업 •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사업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 제출 서류

-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공사개요, 공사장 위치도, 방진시설 등의 설치명세 및 도면 및 그 밖의 저감 대책(건설업만 해당)

◆ 나.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를 하려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단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및 제2항

◆ 변경신고대상

구분	변경신고대상	신고시기
변경 신고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	변경일부터 30일
	비산먼지 배출공정 변경	변경전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 규모를 늘리거나 종류 추가 • 시멘트제조업(석회석의 채광·채취 공정 포함 되는 경우만 해당) • 건설업 중 신고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사업 규모 신고대상 사업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 공사 • 상기 사업이외 사업으로서 사업 규모 10퍼센트 이상 늘리거나 종류 추가	변경전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 변경	변경전
	공사기간 연장(건설공사만 해당)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설치기간 또는 공사기간 종료일

◆ 제출 서류

-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변경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설치 등 조치

- 비산먼지 발생 배출공정별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 및 별표 14
- 야적, 수송, 분쇄, 야외절단 등 비산먼지 발생 배출공정별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

여기서 잠깐!!

- ◆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
 - **(관련 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5항 및 별표 15
 - **(관련 내용)**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비산먼지 다량 발생 사업으로서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음
 - **(대상 사업)** 시멘트 제조업,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석탄제품 제조업,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I



물환경

5.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6. 비점오염원 설치 및 운영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01 개요

- ◆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고 해당 시설을 설치 할 때에는 동 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폐수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 폐수배출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도지사에게 가동시작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가동시작신고 전에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합니다
- ◆ 폐수배출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해당 시설을 항상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동 시설의 운영상황을 사실대로 기록·보존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 측정기기 부착 및 환경기술인 임명 • 폐수배출시설 등 가동시작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 폐수배출시설 등 적정 운영
- 폐수배출시설 등 운영상황 기록·보존
- 측정기기 적정 운영·관리

I



02 용어 설명

용어	내용
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
수질오염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2)
특정수질 유해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3)
폐수배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해양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은 제외(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4)
폐수무방류 배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 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폐수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수질오염 방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5) <p>◆ 참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오염원)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거·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2) • (비점오염원)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장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 (기타수질오염원)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물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03 폐수배출시설 설치

◆ 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37조제1항

◆ 허가 및 신고대상

구분	신고대상 사업
허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¹⁵⁾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하 '허가기준')으로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 2.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3.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¹⁶⁾하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이하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4.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효거리 10km 이내에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5.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효거리 15km 이내에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6. 설치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서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이 변경되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허가기준 이상으로 새로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 7.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서 환경부령¹⁷⁾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설치 가능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대상 폐수배출시설(1~6) 외의 폐수배출시설 • 허가대상 폐수배출시설(1~6) 중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위탁 받은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허가대상 지역 또는 구역(2~5) 밖에 있는 경우 • 허가대상 폐수배출시설(2~5)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허가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배출되는 폐수를 전량 공공폐수처리 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

15)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및 별표 13의2

16)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환경부고시 제2018-6호)

17) 구리 및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



◆ 제출 서류

-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신고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용수의 수질분석 자료를 따로 제출)
- 원료(용수 포함)의 사용 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의 경우 도면을 배치도로 같음)
-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인 경우 관련 증빙 서류
-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및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
 -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 분리·집수 시설 등의 시설 설치계획서 및 그 도면
 -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 분리·집수 시설 등의 시설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 및 그 도면
-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 나. 폐수배출시설 설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제3항 및 제34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 제2항,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대상

구분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대상	신청(신고)시기
변경 허가	1.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또는 1일 700㎥ 이상 증가	변경전
	2.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허가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폐수 배출시설의 경우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30 이상 또는 1일 700㎥ 이상 증가	변경전
	3.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개선 필요	변경전
	4. 허가받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서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 변경 필요	변경전
변경 신고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변경 허가 대상은 제외)	변경전
	폐수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의 사업장 종류 변경	변경전
	폐수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 배출(변경허가 대상은 제외)	변경전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 변경	변경전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은 폐수배출시설에 수질 오염방지시설 신규 설치	변경전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일부 폐쇄	변경전
	변경허가 대상을 변경신고로 같음 ¹⁸⁾ 할 수 있는 사항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사업장 소재지 변경 ¹⁹⁾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임대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폐수를 위탁받는 자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전부 폐쇄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그 밖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 변경 ²⁰⁾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18)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자와 폐수의 처리 및 그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를 완료 하고 폐수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폐수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 변경허가 대상을 변경신고로 같음(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19) 허가관청, 신고관청 및 폐수배출시설이 같고,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

20)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의 사업장 종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폐수배출량을 변경하는 경우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제출 서류

-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참고 | 사업장 규모별 구분

- 폐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구분(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종별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1종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m ³ 이상인 사업장
2종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m ³ 이상인 사업장
3종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m ³ 이상인 사업장
4종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m ³ 이상인 사업장
5종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m ³ 미만인 사업장

※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1년 중 폐수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기준으로 함. 폐수배출량은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및 해수 등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 포함)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 다만,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물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에 방류되기 전에 일정 관로를 통하여 생산 공정에 재이용되는 물은 제외하되, 희석수, 생활용수, 간접냉각수, 사업장 내 청소용 물, 원료야적장 침출수 등을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물은 포함

- 폐수배출량 = 용수사용량 - (생활용수량 + 간접냉각수량 + 보일러용수량 + 제품함유수량 + 공정 중 증발량 + 그 밖의 방류구로 배출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물의 양) + 공정중 발생량

◆ 다.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고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수질오염 물질이 폐수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 다만,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되며, 사전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

◆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기준

- 폐수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폐수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 폐수처리업 허가업체 등에 다음에 해당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 1일 50㎥ 미만(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은 20㎥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 다만, 아파트형 공장에서 고정된 관망을 이용하여 이송처리하는 경우에는 폐수량에 상관없이 위탁처리 가능
- 다른 폐수와 성상이 달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될 경우 적절한 처리가 어려운 폐수로서 1일 50㎥ 미만(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은 20㎥미만) 배출되는 폐수
- 폐기물배출해역에 배출할 수 있는 폐수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나 보수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수로서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된 기간에만 배출되는 폐수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위탁처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폐수



-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폐수를 제조공정에서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로서 수질오염물질을 차단된 공정 밖으로 배출하지 아니하고도 적절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시설이나 공정의 특성에 따라 더 이상 재이용이 불가능한 폐수가 부득이하게 공정 밖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폐수처리업 허가업체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 처리하여야 함
-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업체가 지정해역에 배출하는 경우 또는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하고 배출해역을 지정받은 자에게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경우
- 수질오염물질의 성상이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어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업체 등에 위탁처리하는 경우
- 폐수를 제품 또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다른 폐수의 처리 또는 연구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제출 서류

-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요건별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 참조

◆ 준수사항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 14 참조

- 폐수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에서 나오는 수질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공동으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사전에 사업자 또는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 대표자는 관련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 제출 서류

-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함)
- 사업장별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수질오염물질 등의 배출량 예측서
- 사업장별 원료사용량·제품생산량에 관한 서류,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배수관거설치도면 및 명세서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배출량을 각각 확인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 등 측정기기의 설치계획 및 그 부착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만 제출)
-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의 배출 부과금·과태료·과징금 및 벌금 등에 대한 부담명세를 포함한 공동 방지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04 폐수배출시설 운영

◆ 가. 측정기기 부착

- 폐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수질오염물질이 폐수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측정기기 종류 및 부착대상 사업장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별표 7 및 비고 제1호·제2호

구분	수질자동 측정기기 ²¹⁾	부대시설		적산 전력 계	적산유량계	
		자동시료 채취기	자료 수집기		용수	하·폐수
1종~3종사업장	○	○	○	○	○	○
4종사업장	-	-	-	○	○	○
5종사업장	-	-	-	○	○	-
5종사업장 (특정수질유해물질 30m ³ /일이상)	-	-	-	○	○	○
공동 방지 시설	200m ³ /일이상	○	○	○	○	○
	200m ³ /일미만	-	-	-	○	○

21) 수소이온농도(pH) 수질자동측정기기, 총 유기탄소량(TOC)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유물질량(SS) 수질자동측정기기, 총질소(T-N)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총인(T-P) 수질자동측정기기 등 5종

◆ **측정기기 부착 면제대상, 부착 유예 등**

- 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제10호 참조

◆ **측정기기 부착시기**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3호
- 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 : 가동시작신고 전
-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 가동시작신고를 한 후 2개월 이내
 - 다만, 폐수배출량 증가에 따라 부착대상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폐수배출 시설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일부터 9개월이내

◆ **측정기기 부착방법**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 참조

◆ **나. 환경기술인 임명**

- 폐수배출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2항 및 별표 17

◆ **환경기술인 임명기간**

- 폐수배출시설을 최초로 설치한 경우 : 가동시작신고와 동시
- 환경기술인을 교체·임명하는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²²⁾

◆ **사업장별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사업장 구분	자격기준
1종사업장	수질환경기사 1명 이상
2종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
3종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 직접 종사자 1명 이상
4종사업장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수리된 자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수리된 자가 해당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5종사업장	

22) 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교체·임명하는 경우로서 자격이 있는 구직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4종·5종사업장의 자격기준에 준하여 임명 가능

❖ 비교

- 1) 연간 90일 미만 조업하는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은 4종·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 선임 가능
- 2)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1종 또는 2종사업장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3종사업장은 4종·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음
- 3)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4종 또는 5종사업장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함.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1일 10m³ 이하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4) 폐수배출량이 4종 또는 5종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 방지시설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함
- 5)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사업장과 공동 방지시설에서 폐수를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은 4종·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음
- 6) 대기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가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 겸임 가능

◆ 다. 폐수배출시설 등 가동시작신고

- 폐수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하거나 폐수배출시설의 변경²³⁾을 완료한 경우 그 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가동 시작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업체 또는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업체 등에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6조

23) 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만 해당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시작신고 대상

-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
- 폐수배출시설에서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 필요
- 폐수배출시설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변경
-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폐수배출시설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신규 설치

◆ 제출 서류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 가동시작신고한 이후 시운전 기간 이내에 폐수배출시설²⁴⁾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폐수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2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 시운전 기간

- 폐수처리방법에 따라 시운전 기간은 다름

폐수처리방법	시운전 기간
생물화학적 처리	가동시작일부터 50일(가동시작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 까지인 경우 가동시작일부터 70일)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가동시작일부터 30일

24)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

◆ 라. 폐수배출시설 등 적정 운영

- 폐수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해당 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관련 규정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시 금지행위

-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않는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않는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폐수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물을 섞어 배출(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희석처리 인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폐수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

- 아울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관련 규정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2항

◆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운영시 금지행위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않고 다른 폐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 용수·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



- 아울러, 폐수배출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록일부터 1년간 보존²⁵⁾ 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3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 마. 측정기기 적정 운영·관리

- 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측정기기를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측정기기로 측정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측정기기 운영시 금지행위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
-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않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행위
- 부식·마모·고장 또는 훼손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
- 측정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 측정기기 운영·관리 기준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2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0조 참조

◆ 참고 | 위·수탁 폐수의 전산처리

■ 관련 규정

물환경보전법 제66조의2제2항

■ 내용

폐수의 처리를 위탁하는 사업자와 폐수처리업 허가업체는 해당 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²⁶⁾에 입력하여야 함

25)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운영일지를 3년간 보존

26) 폐수처리업자가 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환경부장관이 구축·운영(물환경보전법 제66조의2제1항)

비점오염원 설치 및 운영



I



01 개요

- ◆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하려 하거나 비점오염 유발가능성이 큰 사업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기 위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고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운영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비점오염원 설치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비점오염원 운영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운영기준 등 준수

02 용어 설명

용어	내용
비점오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비점오염 저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6)
수질오염 방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5)
수질오염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2)

03 비점오염원 설치 및 운영

◆ 가.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

-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 및 제2항

◆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사업 및 시설

구분	신고대상 비점오염원	신고기한
개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부터 제17호까지 해당하는 사업²⁷⁾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할 날부터 60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의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재작성·재협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면적 1만㎡ 이상 사업장으로서 제철 시설, 섬유염색시설 또는 14개 업종²⁸⁾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 신고를 하는 위의 사업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 제출 서류

-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 개발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주요 비점오염원 및 비점오염물질에 관한 자료
- 개발사업 등의 평면도 및 비점오염물질의 발생·유출 흐름도
- 개발사업 등의 유지 관리 및 강우유출수 저감방안 등에 관한 비점오염저감 계획서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운영 관리계획,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27)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4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목의 바다에서만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

28) ①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②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③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④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⑤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⑥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⑦제1차 금속산업 ⑧석탄·원유 및 우라늄 광업 ⑨금속 광업 ⑩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⑪음·식료품 제조업 ⑫전기·가스업 및 증기업 ⑬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 ⑭하수처리업·폐기물처리업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여기서 잠깐!!

•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제2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제2항 및 별표 3 참조

◆ 나. 비점오염원 설치 변경신고

-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비점오염원 설치 변경신고를 하려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3조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제6항

◆ 변경신고대상

구분	변경신고대상	신고시기
변경 신고	상호, 대표자, 사업명 또는 업종 변경	변경일부 3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사업면적·개발면적 또는 사업장 부지면적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15이상 증가 • 비점오염저감시설 종류, 위치, 용량 변경. 다만, 시설 용량이 신고용량의 100분의 15미만 변경되는 경우 제외 • 비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전부 또는 일부 폐쇄. 다만,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 중에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사 완료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폐쇄하는 경우는 제외 	변경일부 15일 또는 변경승인 등을 받은 날부터 ²⁹⁾ 15일

29 비점오염원 신고 대상 사업 또는 시설과 관련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 제출 서류

- 비점오염원 설치 변경신고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기 위하여 비점오염저감 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5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시점

- 개발사업
 - 공사중에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 공사개시 전
 - 공사완료 후에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 공사 준공시. 다만, 다른 공사가 완료된 사업부지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
- 사업장 : 폐수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신고 전. 다만, 공장이 설립된 부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기준

-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5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 17 참조

- 다만, 비점오염원 설치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5항 단서



◆ 비점오염원 설치면제 요건

-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폐수배출허용기준 이하인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에 강우유출수를 처리하는 경우
- 하나의 부지에 위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면제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점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기 위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6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 및 별표 18, 제3항

◆ 준수사항

-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할 것
-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하는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을 준수할 것
-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자를 정하여 강우 전후 시설물을 점검하도록 할 것
- 시설물 점검결과를 관리·운영대장(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에 기록하여 2년간 비치할 것

생활환경

7.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8. 악취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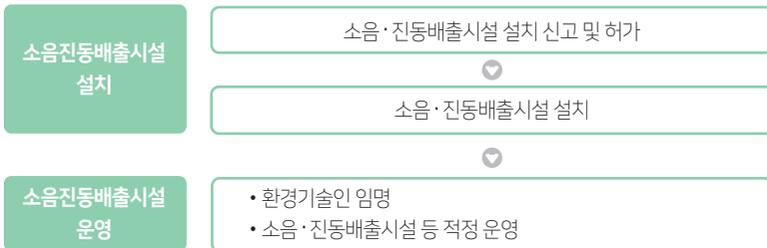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이 개 요

- ◆ 공장에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학교 또는 종합병원 등의 주변 지역 공장에 동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거나 설치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고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면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진동을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소음·진동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 소음·진동배출시설과 소음·진동방지시설의 적정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합니다
- ◆ 또한, 소음·진동배출시설 또는 소음·진동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끝내고 동 시설을 가동한 경우에는 가동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합니다



02 용어 설명

용어	내용
소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2호)
소음·진동 배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장의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별표 1)
소음·진동 방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음·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4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2)
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장을 말함. 다만,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공장시설 안의 항공기 정비공장은 제외(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7호)

03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 가.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

- 공장에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학교 또는 종합병원 등의 주변지역 공장에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 지역

-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및 대학 등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주거지역 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
- 100개 이상의 병실을 갖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제출 서류

구분	신고	허가
제출 서류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신고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소음·진동방지시설 설치 명세서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명세서 및 배치도
	• 소음·진동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	• 소음·진동방지시설 설치명세서와 도면 • 소음·진동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

여기서 잠깐!!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 제외 대상 지역

- **(관련 규정)**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3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4항
- **(관련 내용)** 산업단지나 일반공업지역 등에 위치한 공장에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됨. 이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 제4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 사업자로 봄
- **(대상 지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 자유무역지정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 위의 지정된 지역과 유사한 지역으로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고시한 지역

◆ 나.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변경신고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를 신고하거나 설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려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표 6, 제2항

◆ 변경신고대상

구분	변경신고대상	신고시기
변경 신고	소음·진동배출시설 규모 100분의 50이상(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규모를 증설하는 누계) 증설	변경전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	변경일부터 60일
	소음·진동배출시설 전부 폐쇄	변경전



◆ 제출 서류

-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 원본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다. 소음·진동방지시설 설치

-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면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이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소음·진동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소음·진동관리법 제9조

- 소음·진동방지시설 설치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음·진동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³⁰⁾

◆ 소음·진동방지시설 설치 면제 요건

- 소음·진동관리법 제9조 단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음·진동배출시설의 기능·공정 또는 공장의 부지 여건상 소음·진동이 항상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해당 공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다음 시설이 없는 경우
 - 주택·상가·학교·병원·종교시설
 - 공장 또는 사업장
 - 관광지 및 관광단지
 -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지역

30)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상가·학교·병원 등이 해당 공장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새로 설치되거나 해당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소음·진동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함(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 지식산업센터 또는 공장 밀집 지역에서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공동으로 방지하기 위해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소음·진동관리법 제12조제1항

◆ 라. 소음·진동방지시설 운영

- 소음·진동배출시설과 소음·진동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임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관련 규정

- 소음·진동관리법 제19조제1항 및 제5항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별표 7

◆ 환경기술인 임명시기

- 임명하는 경우 : 소음·진동배출시설 가동개시일까지(최초로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
-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 바꾸어 임명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사업장 구분	자격기준
총 동력합계 3,750kW 미만인 사업장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소음·진동배출시설 및 소음·진동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총 동력합계 3,750kW 이상인 사업장	소음 진동기사 2급 이상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해당 사업장의 관리책임자로 사업자가 임명하는 자

- 1) 총 동력합계는 소음배출시설 중 기계·기구 동력 총합계로서,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기구와 기타 시설 및 기계·기구는 제외
- 2) 소음·진동기사 2급은 기계분야기사·전기분야기사 각 2급 이상의 자격소지자로서 환경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 가능
- 3) 소음·진동방지시설 면제 사업장은 대상 사업장의 소재 지역 및 동력 규모에도 불구하고 총 동력합계 3,750kW 미만 사업장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 임명 가능
- 4)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경우 해당 사업장에 상시 근무하여야 함



- 소음·진동배출시설 또는 소음·진동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끝내고 소음·진동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에는 가동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이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소음·진동관리법 제14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악취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I



01 개요

- ◆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신고대상으로 지정·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합니다
- ◆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라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동 계획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의 가동 전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악취배출시설 설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악취방지계약서에 따라 악취방지 조치



악취배출시설 운영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02 용어 설명

용어	내용
악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
지정악취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악취방지법 제2조제2호,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악취배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2)
악취관리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악취방지법 제6조제1항,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지정하는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서 악취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악취 관련 민원이 집단 발생하는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㊹ 전용공업지역 ㊺ 일반공업지역(자유무역지역으로 한정)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의 신고대상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악취방지법 제8조의2제1항 및 제4항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과 관련하여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음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03 약취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 가. 약취배출시설 설치 신고

- 약취관리지역에 약취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합니다
- 약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지정·고시된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정·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약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약취방지계획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약취가 항상 약취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약취방지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약취방지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의2제2항, 약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

◆ 제출 서류

- 약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약취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사업장 배치도
- 약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공정도
- 약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 예측 명세서
- 약취방지계획서
- 약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 약취방지계획서 제출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서류
 - 약취배출시설 기능·공정·사용원료(부원료 포함)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 약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약취가 항상 약취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약취검사기관의 시험분석자료
 - 시험분석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자료



◆ 참고

-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를 하거나 같은법 제44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의 제출로 악취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 나.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

-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려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의2제2항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

◆ 변경신고대상

구분	변경신고대상	신고시기
변경 신고	악취배출시설의 악취방지계획서 또는 악취방지시설 변경 (사용하는 원료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제외)	변경전
	악취배출시설 폐쇄 또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규모 기준에서 정하는 공정을 추가하거나 폐쇄	변경전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	변경전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 임대	변경전
	악취배출시설에서 사용하는 원료 변경	변경전

◆ 제출 서류

-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변경명세서(악취배출시설 폐쇄,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은 제외)



- 악취물질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악취배출시설 폐쇄,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은 제외)
- 악취방지계획서(악취배출시설 폐쇄,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은 제외)
-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확인증 원본

◆ **다.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

- 악취방지계획서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의 경우에는 악취배출시설의 가동 전에,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의 신고대상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³¹⁾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악취방지법 제8조제4항, 제8조의2제3항

◆ **참고 | 악취방지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4
- 악취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³²⁾을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 조치 중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를 포함하여야 함

용어	내용
악취방지시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악취방지시설 중 적절한 시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소에 의한 시설 - 흡수에 의한 시설 - 흡착에 의한 시설 -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 응축에 의한 시설 -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 미생물을 이용한 시설
소취제 등 살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능이 확인된 소취제·탈취제 또는 방향제의 살포를 통한 악취의 제거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관시설의 밀폐, 부유상 덮개 또는 상부 덮개의 설치, 물청소 등을 통한 악취 억제 또는 방지 조치

31) 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악취방지법 제8조의2제3항)

32)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배출허용기준으로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음(악취방지법 제7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3)

잔류성오염물질, 토양, 폐기물

9.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10.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및 운영

1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01 개 요

- ◆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시설기준 외에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잔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잔류성오염물질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또한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경우 동 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 물질을 측정하여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 잔류성오염물질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잔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충족시설 설치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 배출허용기준 준수
- 자가측정
- 주변지역 영향 조사

I



02 용어 설명

용어	내용																
잔류성 오염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성·잔류성·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로서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 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며, 구체적인 물질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p>◆ 참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감소를 목적으로 지정물질의 제조·사용·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제 협약으로 2001년 5월 채택되었으며, 2004년 5월 발효됨 •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장거리 이동과 생체 축적성이 높은 대표적인 유해 물질인 수은의 사용과 배출을 줄여 수은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무역, 수은첨가제품 및 제조공정, 대기 중 배출, 수은 폐기물 처리까지 수은의 전 과정 관리에 대한 포괄적 규제하는 국제협약으로 2013년 10월 채택되었으며, 2017년 8월 발효됨 																
잔류성 오염물질 배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류성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것(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 잔류성오염 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4CAF50; color: white;">배출시설</th> <th style="background-color: #4CAF50; color: white;">대상 배출시설</th> </tr> </thead> <tbody> <tr> <td style="background-color: #e8f5e9;">제철 및 제강시설</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량이 시간당 300kW 이상인 전기아크로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1m³ 이상인 소결로 </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8f5e9;">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량이 시간당 300kW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 포함) </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8f5e9;">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상면적이 4.5m² 이상인 반사로 •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인 도가니로 </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8f5e9;">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1m³ 이상인 전로, 정련로, 배소로, 용융·용해로, 전해로, 건조로 </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8f5e9;">시멘트 제조시설</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3m³ 이상인 소성시설 </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8f5e9;">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시설</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1m³ 이상인 이염화 에틸렌·염화비닐 제조시설 </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e8f5e9;">소각시설</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당 소각능력이 25kg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폐기물소각열 회수시설 포함) </td> </tr> </tbody> </table>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제철 및 제강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량이 시간당 300kW 이상인 전기아크로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1m³ 이상인 소결로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량이 시간당 300kW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 포함)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상면적이 4.5m² 이상인 반사로 •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인 도가니로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1m³ 이상인 전로, 정련로, 배소로, 용융·용해로, 전해로, 건조로 	시멘트 제조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3m³ 이상인 소성시설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1m³ 이상인 이염화 에틸렌·염화비닐 제조시설 	소각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당 소각능력이 25kg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폐기물소각열 회수시설 포함)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제철 및 제강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량이 시간당 300kW 이상인 전기아크로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1m³ 이상인 소결로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량이 시간당 300kW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 포함)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상면적이 4.5m² 이상인 반사로 •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인 도가니로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1m³ 이상인 전로, 정련로, 배소로, 용융·용해로, 전해로, 건조로 																
시멘트 제조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3m³ 이상인 소성시설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1m³ 이상인 이염화 에틸렌·염화비닐 제조시설 																
소각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당 소각능력이 25kg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폐기물소각열 회수시설 포함) 																

03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 가.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기준 준수

-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시설기준 외에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 잔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5조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기준 준수 대상 타법 인·허가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변경신고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변경신고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또는 제1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변경신고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고 또는 변경승인·변경신고

◆ 나.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시 준수사항

-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때에 동 시설에서 배기가스 및 폐수 등으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4조제3항



-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측정기관³³⁾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측정결과를 기록하여 측정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4조제3항

◆ 측정기간

- 최초 측정 : 최초 가동일부터 기산하여 매체·시설별 측정주기에 해당하는 기간의 종료일 전후 30일 이내
- 최초 측정이 아닌 경우 : 마지막 측정일부터 기산하여 매체·시설별 측정주기에 해당하는 기간의 종료일 전후 30일 이내
- 조업물량 감소, 시설 개선 등의 사유로 측정기간 중에 미가동 하거나 사용을 중지해야 하는 경우 : 재가동일부터 30일 이내

◆ 측정주기 및 횟수, 측정물질

매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측정 대상	측정주기 및 횟수	측정 물질
배기 가스	소각시설	처리능력 2톤/hr 이상	1회/6개월 이상	다이옥신 (표관 포함)
		처리능력 0.2톤/hr 이상	1회/12개월 이상	
		처리능력 25kg/hr 이상	1회/24개월 이상	
	소각시설 이외 시설	다이옥신 발생량 25g-TEQ/년 이상	1회/6개월 이상	
		다이옥신 발생량 4g-TEQ/년 이상	1회/12개월 이상	
	다이옥신 발생량 4g-TEQ/년 미만	1회/24개월 이상		
폐수	모든 시설	이염화에틸렌, 염화비닐 제조시설	1회/6개월 이상	
		위의 시설 외의 모든 시설	1회/12개월 이상	

33) 한국환경공단, 보건환경연구원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측정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 보건환경연구원,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주변 지역에 현저한 환경오염의 영향을 미치는 일정 규모 이상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사하거나 측정기관³⁴⁾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조사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제2항,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제2항,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7, 제2항

◆ 주변지역 영향조사 대상 시설 및 조사횟수·시기

구분	조사대상 시설	조사횟수·시기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5천톤 이상인 철강 소결로 •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3천톤 이상인 철강 전기로 •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1만 2천톤 이상인 시멘트 소성로 •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50톤 이상인 동 압연·압출 및 연신시설 <p>◆ 참고 하루 최대 생산능력은 사업장 내 다수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 각 시설의 하루 최대 생산능력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p>	3년마다 겨울철 (12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에 1회 이상

34) 한국환경공단, 보건환경연구원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측정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 보건환경연구원,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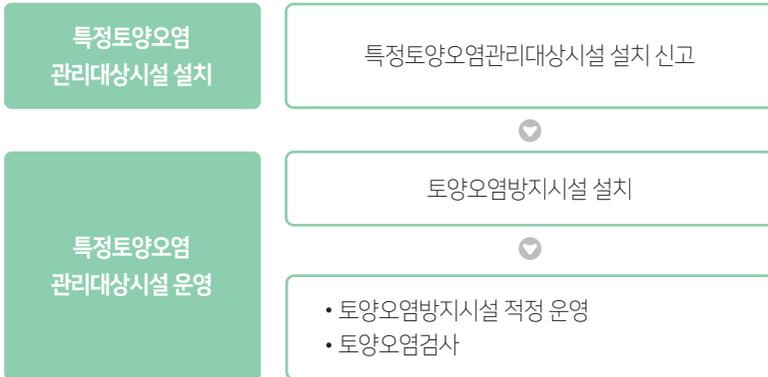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및 운영



01 개 요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 ◆ 또한,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해당 시설의 부지와 주변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02 용어 설명

용어	내용								
토양오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 								
토양오염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오염물질의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 등으로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 및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별표 2) 								
	<table border="1"> <thead> <tr> <th>종류</th> <th>대상범위</th> </tr> </thead> <tbody> <tr> <td>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 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 시설은 제외) </td> </tr> <tr> <td>유해화학물질 제조 및 저장시설</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 중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 용제류의 경우에는 TCE, PCE 저장시설에 한함) </td> </tr> <tr> <td>송유관시설</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시설 중 송유용 배관 및 탱크 </td> </tr> </tbody> </table>	종류	대상범위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 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 시설은 제외) 	유해화학물질 제조 및 저장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 중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 용제류의 경우에는 TCE, PCE 저장시설에 한함) 	송유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시설 중 송유용 배관 및 탱크
	종류	대상범위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 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 시설은 제외) 							
유해화학물질 제조 및 저장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 중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 용제류의 경우에는 TCE, PCE 저장시설에 한함) 								
송유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시설 중 송유용 배관 및 탱크 								
<p>기타 위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p>									
토양오염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를 말함(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제2조제1호, 환경부예규 제597호) 								
토양오염도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토양오염물질의 함유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제2조제2호, 환경부예규 제597호) 								
누출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장시설 및 이송배관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저장물질이 누출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제2조제3호, 환경부예규 제597호) 								



0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및 운영

◆ 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신고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의 내용과 토양 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토양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

◆ 제출 서류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신고서(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설비 명세표
- 그 밖에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변경 신고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제2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및 제9조



◆ 변경신고대상

구분	변경신고대상
변경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사용 종료 또는 폐쇄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교체 또는 토양오염방지시설 변경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 변경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저장용량을 신고용량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설(신고용량 대비 30퍼센트 미만의 증설이 누적되어 신고용량의 30퍼센트 이상 되는 경우 포함)

◆ 제출 서류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변경신고서(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신고증명서 원본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참고 |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 의제

■ 다른 법률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의제

• 관련 규정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 세부 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및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를 한 것으로 봄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변경신고에 따른 다른 법률의 변경신고 의제

• 관련 규정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

• 세부 내용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봄. 변경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 다.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부식·산화방지를 위한 처리를 하거나 토양 오염물질 누출 예방을 위하여 누출방지성능을 가진 재질을 사용하거나 이중벽탱크 등 누출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것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지하에 매설되는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토양 오염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감지하거나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 기기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것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부터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될 경우에 대비하여 오염확산방지 또는 독성 저감 등의 조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것
- 보다 구체적인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유지·관리기준은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18-187호) 별표 1 참조

◆ 라. 토양오염검사

-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해당 시설의 부지와 주변 지역에 대하여 토양 오염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토양오염검사 검사종류(정기/수시검사) 및 검사주기 등

-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2항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2항 및 별표 4

- 아울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4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6조

- 토양오염검사 면제요건에 해당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토양오염검사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면제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 단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 토양오염검사 면제요건

- 송유관시설로서 유류의 유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된 경우 (토양오염도검사에 한함) 또는 안전검사를 받는 경우(누출검사에 한함)
- 토양시추를 할 수 없는 지반 또는 건물지하 등에 설치되어 토양시료의 채취가 불가능하다고 토양오염조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저장시설에 1년 이상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지 아니한 경우 등 토양관련 전문기관이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동종의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다수의 시설 중 일부 시설의 사용을 종료 하거나 폐쇄하는 경우(토양오염도 검사에 한함)
- 권장 설치·유지·관리기준에 맞게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날부터 15년 이내인 경우(정기토양검사로 한정)
- 검사항목이 같은 종류의 토양오염물질로 저장물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토양오염도검사에 한함)
- 그 밖에 토양정화명령을 받고 정화중인 경우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 제출 서류

- 토양오염검사 면제승인 신청서(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 토양오염검사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참고 | 토양관련전문기관 종류 및 자격요건

■ 관련 규정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 종류

- 토양환경평가기관 : 토양환경 평가를 하는 기관
- 위해성평가기관 : 위해성평가를 하는 기관
- 토양오염조사기관 : 다음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토양정밀조사
 - 토양오염도검사
 - 토양정화의 검증
 -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지도·감독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토양오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 누출검사기관 : 토양오염검사 중 누출검사를 하는 기관

■ 관련 규정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되기 위한 검사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³⁵⁾을 갖추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함

- 토양환경평가기관 및 위해성평가기관 : 환경부장관
- 토양오염조사기관 및 누출검사기관 : 시·도지사

35) 토양관련전문기관 자격기준(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이 개요

- ◆ 폐기물처리시설³⁶⁾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설치공사를 끝내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하려면 시·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고,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에 따라 적정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오염물질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야 합니다
- ◆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합니다
- ◆ 또한,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장부에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 담당자는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6) '이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거나 받기 위하여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 시설은 제외'



02 용어 설명

용어	내용
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사업장 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지정 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의료 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
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양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함(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
재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②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폐기물 처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3)

0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및 신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수리 기관

• (관련 규정)

폐기물관리법 제62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 (대상 기관)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대상 폐기물 종류에 따라 구분³⁷⁾됨

구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시·도지사
대상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제외)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동일 폐기물처리 시설에서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시설 포함) • 종합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권한 외의 폐기물을 처리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 관련 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 승인 및 신고대상³⁸⁾

대상 시설	시설 능력	승인대상	신고대상
일반 소각시설	1일 처분능력	100톤(지정 폐기물 10톤) 이상	100톤(지정 폐기물 10톤) 미만
고온소각시설, 열분해시설, 고온용융시설, 열처리조합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100kg 이상	100kg 미만

3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업무 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583호) 참조

3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업무 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583호) 참조



대상 시설	시설 능력	승인대상	신고대상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증발·농축, 정제 또는 유수분리 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	125kg 이상	125kg 미만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압축·압출·성형·주조·파쇄· 분쇄·탈피·절단·용융·용해· 연료화·소성(시멘트 소성로 제외) 또는 탄화시설	1일 처분 능력 또는 재활용능력	100톤 이상	100톤 미만
생물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1일 처분 능력 또는 재활용능력	100톤 이상	100톤 미만
소각열회수시설	1일 재활용능력	100톤 이상	100톤 미만
매립시설	-	대상	비대상
시멘트 소성로	-	대상	비대상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탈수·건조시설, 멸균분쇄시설 및 화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	비대상	대상

◆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신청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 명세서(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폐기물 종류, 성질·상태 및 예상 배출량 명세서(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 계획서(재활용시설의 경우 재활용용도 또는 방법 포함)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구분

제출 서류

신고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계도서(음식물류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시설인 경우 물질수지도 포함)
- 처분 또는 재활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 계획서
-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공동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해당)
- 폐기물 매립시설의 경우 사후관리계획서
- 환경부장관이 고시³⁹⁾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 (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이상인 매립시설, 1일 처분능력이 100톤 이상(지정폐기물 10톤)인 소각시설, 1일 재활용 능력이 100톤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이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만 해당,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등으로 대체 가능)
- 대기배출시설 등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동 배출 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 별지 제25호서식)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 환경부장관이 고시⁴⁰⁾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 (1일 소각용량 50톤 이상 소각시설 또는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해당)
-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공동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만 해당)
- 대기배출시설 등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동 배출 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39)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환경부고시 제2015-200호)

40)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환경부고시 제2015-200호)

- 학교·연구기관 등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 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가 면제되며, 이 경우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를 시·도지사 또는 유역 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 면제 대상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그 부설 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참고 | 다른 법령에 따른 승인·신고 의제

■ 관련 규정

폐기물관리법 제32조제1항

■ 내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다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봄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각각 변경 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면 관련 서류를 구비 하여 시·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3항
-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3항 및 제4항, 제40조제3항 및 제4항

◆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대상

구분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대상	신청(신고)시기
변경 승인	상호 변경(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한 경우만 해당)	사유 발생일 부터 30일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변경	변경전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소재지 변경	변경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 증가	변경전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변경전
	주요설비 변경	변경전
변경 신고	상호 변경(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한 경우만 해당)	사유 발생일 부터 30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소재지 변경	변경전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변경	변경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 증가	변경전
	주요 설비 변경	변경전



◆ 제출 서류

구분	변경승인	변경신고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승인 신청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 원본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호 변경의 경우)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변경계획서(용량 또는 주요설비 등 변경의 경우) • 대기배출시설 등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첨부서류(해당되는 경우) • 환경성조사서(해당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신고서 원본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호 변경의 경우)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변경계획서(용량 또는 주요설비 변경의 경우) • 대기배출시설 등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첨부서류(해당되는 경우)

04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 가.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고 설치공사를 끝낸 후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하려면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관련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 제출 서류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또는 폐기물 매립시설 사용개시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 다음 시설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결과서
 - 소각시설



- 매립시설
- 열균분쇄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9)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포함)
-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100kg 이상인 시설 (이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 소각열회수시설

◆ 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 소각시설, 매립시설 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5항

◆ 폐기물처리시설별 정기검사 주기

구분	최초 검사	2회 이후 검사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전후 30일 이내 ⁴¹⁾	최종 정기검사일 ⁴²⁾ 부터 3년이 되는 날 전후 30일 이내
매립시설	사용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 전후 30일 이내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전후 30일 이내
열균분쇄시설	사용개시일부터 3개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개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 전후 30일 이내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 전후 30일 이내
시멘트 소성로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전후 30일 이내 ⁴³⁾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전후 30일 이내

41)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용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

42)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 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이하 이 표에서 같음)

43)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용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

◆ 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별표 11

◆ 라.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오염물질 측정

- 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오염물질을 측정하거나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시·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고 사후관리가 끝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2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3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제3항 및 별표 1

◆ 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및 측정주기

구분	측정주기	측정대상 오염물질
침출수 배출량이 1일 2천㎡ 이상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적 산소요구량: 매일 1회 이상 • 그 외 오염물질: 주 1회 이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 나목2)가)에 따른
침출수 배출량이 1일 2천㎡ 미만인 경우	월 1회 이상	배출허용기준 대상항목

◆ 참고 |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오염물질 측정기관

■ 관련 규정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 측정기관

보건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 등록업자,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 폐기물분석전문기관

◆ 마. 기술관리인 임명

-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거나 기술관리 능력을 보유한 기술관리대행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34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5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별표 14

◆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구분	대상시설 규모
매립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폐기물) 매립면적이 3천3백㎡ 이상인 시설. 다만, 차단형 매립시설의 경우 매립면적이 330㎡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1천㎡ 이상인 시설 • (그 외 폐기물) 매립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이상인 시설
소각시설	시간당 처분능력이 600kg(의료폐기물의 경우 200kg) 이상인 시설
압축·파쇄·분쇄 또는 절단시설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
사료화·퇴비화 또는 연료화시설	1일 재활용능력이 5톤 이상인 시설
멸균분쇄시설	시간당 처분능력이 100kg 이상인 시설
시멘트 소성로	-
용해로 ⁴⁴⁾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600kg 이상인 시설
소각열회수시설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600kg 이상인 시설

44) 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경우로 한정



◆ 기술관리인 자격기준

구분	자격기준
매립시설	폐기물처리기사, 수질환경기사, 토목기사,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화공기사, 토양환경기사 중 1명 이상
소각시설 (의료폐기물 제외) 시멘트 소성로, 용해로 소각열회수시설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기사, 토목기사,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화공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중 1명 이상
의료폐기물 대상 시설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임상병리사, 위생사 중 1명 이상
음식물류 폐기물 대상시설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기사 중 1명 이상
그 밖의 시설	같은 시설 운영 담당 1명 이상

❖ 비고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대기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또는 소음 진동배출시설 등에 해당할 때에는 관련 법에 따른 환경관리인이 기술관리인 겸임 가능

◆ 참고 | 기술관리대행자

■ 관련 규정

폐기물관리법 제34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6조

■ 기술관리대행자

한국환경공단, 엔지니어링 사업자, 기술사사무소(기술관리인 자격을 가진 기술사가 개설한 사무소로 한정),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기술관리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 바. 그 밖의 준수사항

-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등 폐기물처리 담당자는 3년마다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나목·다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및 제2항제1호가목·제2호다목

◆ 폐기물처리 담당자별 교육기관

구분	교육기관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또는 그 시설의 설치자로서 스스로 기술관리를 하는 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폐기물협회
폐기물처리시설 ⁴⁵⁾ 설치·운영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폐기물협회
폐기물처리시설 ⁴⁶⁾ 설치·운영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환경보전협회 또는 한국폐기물협회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장부에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제5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기록 장부

-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
-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 폐기물 재활용시설 운영·관리대장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 2서식

4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설치승인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되며,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 처리시설은 제외

4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되며,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 시설은 제외

통합환경허가

12. 배출시설등 통합 허가 및 운영



배출시설등 통합 허가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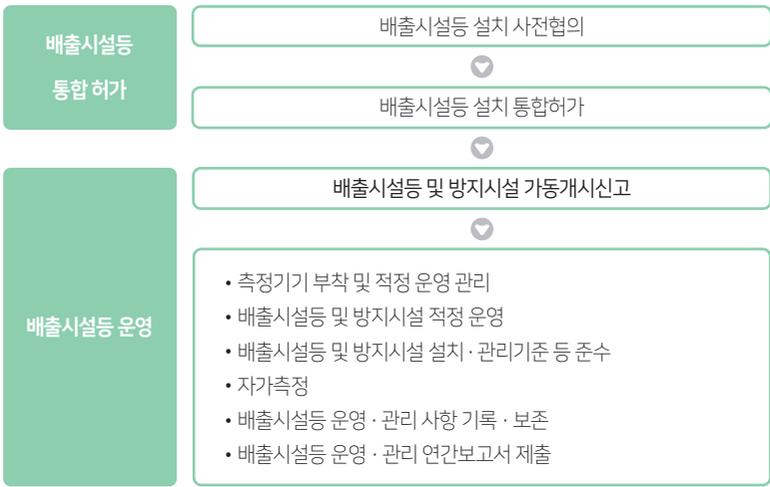
12

I



1 개 요

- ◆ 배출시설등의 통합허가 대상 사업자가 통합허가 등을 신청하기 이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배출시설등의 통합허가 대상 사업자가 동 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환경부장관에게 가동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아울러,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적정 운영·관리하여야 합니다
- ◆ 또한,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기준과 조치기준,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을 측정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02 용어 설명

용어	내용
오염물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물질 등을 말함(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휘발성유기화합물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소음 및 진동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악취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토양오염물질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배출시설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물질등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또는 기구 등으로서 다음의 시설 등을 말함(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대기배출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의 비산배출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의 소음·진동배출시설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비점오염원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 •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방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시설등으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등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별표2)



◆ 참고 | 기배출시설등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 및 적용시기

■ 관련 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3

■ 대상 사업장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먼지,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발생량이 연간 20톤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700m³ 이상인 사업장

■ 적용 시기

업종별로 2017년부터 5년간 단계적 적용(기존 사업장의 경우에는 업종별 적용일로부터 4년 이내)

구분	대상 업종	적용시기
1	전기업	2017.1.1
2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3	폐기물처리업 ⁴⁷⁾	
4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8.1.1
5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6	1차 철강 제조업	
7	1차 비철금속 제조업	
8	석유정제품 제조업	
9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9.1.1

47) 폐기물 처리업에만 속하는 사업장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매립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은 제외

구분	대상 업종	적용시기	
10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 염료, 조제무기안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 제조업 	
11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 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제품 제조업 • 계면활성제 제조업 •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 화장품 제조업 •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 그 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019.1.1
12	비료, 농약 및 살균, 살충제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 살균, 살충제 및 농약 제조업 	
13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펄프 제조업 • 신문용지 제조업 •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 위성용 원지 제조업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020.1.1
14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15	전자부품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시장치 제조업 •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 경성인쇄회로기판 제조업 •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 전자축전기 제조업 •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16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021.1.1
17	알코올음료 제조업		
18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9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0	반도체 제조업		
21	자동차 부품 제조업		

1) 두 개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서 그 업종 중 하나가 위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2) 두 개이상의 통합관리 허가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경우 그 업종의 적용 시기 중 가장 늦은 시기를 적용

03 배출시설등의 통합허가

◆ 가. 배출시설등 사전협의

-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에서 배출시설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의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환경부 장관에게 사전 협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전협의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인은 그 결과를 반영하여 배출시설등의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협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⁴⁸⁾에 환경부장관에게 허가 등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 사전협의 신청 사항

-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계획에 관한 사항
- 허가배출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 배출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 제출 서류

- 사전협의 신청서(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신청내용에 관한 계획서

48) 환경부장관은 사전협의 결과 반영을 위한 조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협의 결과를 통지받은 후 1년 이내에 배출시설등 통합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 신청을 1회 연장할 수 있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5항)

◆ 참고 | 허가배출기준

■ 관련 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관련 내용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최대배출기준⁴⁹⁾ 이하로 허가배출기준을 설정

◆ 참고 | 배출영향분석

■ 관련 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제2호

■ 관련 내용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말하며, 환경부령⁵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분석

◆ 나. 배출시설등 통합허가

- 배출시설등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에서 배출시설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통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배출시설등 통합허가를 받으려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4항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제출 서류

- 배출시설 등 설치·운영 허가신청서(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49) 최적이용기법을 배출시설등에 적용할 경우 오염물질등이 배출될 수 있는 최대치로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업종별 최대배출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함(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및 별표 15)

5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및 별표 4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계획
 - 배출영향분석 결과
 -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계획
 -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대책
 - 사전협의 결과 반영 내용(사전협의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인이 그 결과를 반영하여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사업장 일반현황
 - 배출구별 허가배출기준안
 - 원료 및 연료 등 사용물질
 - 최적가용기법 적용 내역
 - 타법에서 배출시설등의 설치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참고 | 최적가용기법 및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 최적가용기법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계,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환경관리기법으로서 오염물질등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관리기법들로 구성된 기법을 말하며, 환경부장관이 사업장 적용 가능성, 오염물질등 저감효과,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마련(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환경부장관은 사업장에서 최적가용기법이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마련하여 보급(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 다. 배출시설등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 배출시설등 통합허가 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허가 받은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별표 2, 제3항 및 별표 3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6조제2항 및 제3항

◆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대상

구분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대상	신청(신고)시기
변경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또는 1일 폐수배출량 일정 규모 이상 증가 •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등 외에 새로운 오염물질등 발생 • 배출시설등 신설 또는 추가 설치에 따라 허가 배출기준 또는 허가조건 변경 필요 • 기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 등 <p>◆ 참고</p> <p>변경허가 대상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오염 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참조</p>	<p>변경허가 대상별 신청시기는 환경오염 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참조</p>
변경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시설등 증설, 교체, 폐쇄 또는 변경 • 방지시설 증설, 교체, 폐쇄 또는 변경 • 배출시설등에 사용하는 원료·연료 등 변경 또는 배출시설등 운영조건 변경 • 사업장명칭, 대표자 변경 등 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한 사항 변경 <p>◆ 참고</p> <p>변경신고 대상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오염 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참조</p>	<p>변경신고 대상별 신청시기는 환경오염 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3항 참조</p>

◆ 제출 서류

- 배출시설등 변경허가 신청서/변경신고서(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 참고 | 배출시설등 허가조건⁵¹⁾ 및 허가배출기준 검토·변경

-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등 허가 또는 변경허가후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5년마다 검토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할 수 있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04 배출시설등 운영

◆ 가. 배출시설등 가동개시신고

-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경우 해당 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유역지방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배출시설등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 대상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3)에 해당하는 경우 중 배출시설 규모가 100분의 20 이상 증가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7)에 해당하는 경우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14)에 해당하는 경우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5)에 해당하는 경우 중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변경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8)에 해당하는 경우 중 방지시설 설치의무가 면제된 배출시설등에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51)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등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 제출 서류

-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서(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변경허가) 검토 결과서 원본
-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검사 결과서

- 가동개시신고된 시설 중에서 발전소의 질소산화물 감소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은 시설별로 일정 기간 동안 시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 시운전 대상 시설 및 시운전 기간

- 대기오염방지시설(황산화물 감소시설, 질소산화물 감소시설) 및 그 방지시설을 설치한 대기배출시설 : 가동개시일부터 30일간
-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그 방지시설을 설치한 폐수배출시설
 - 생물화학적처리방법 : 가동개시일부터 50일간(가동개시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1까지인 경우 가동개시일부터 70일간)
 -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 : 가동개시일부터 30일간
- 소음·진동방지시설 및 그 방지시설을 설치한 소음·진동배출시설 : 가동개시일부터 30일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 가동개시일부터 30일간

◆ 나. 측정기기 부착 및 적정 운영·관리

- 배출시설등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등의 배출수준 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사용되는 용수 및 전력 등의 사용량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 측정기기 종류

구분	종류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산전력계 • 굴뚝 자동측정기기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산전력계 • 용수 측정용 및 폐수 측정용 적산유량계 • 수질자동측정기기(자동시료채취기, 자료수집기 등 부대 시설 포함)

◆ 측정기기 부착대상방법·시기 및 측정대상·항목방법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별표 12 참조

- 아울러,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는 등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합니다

◆ 측정기기 부착 사업자의 금지 행위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 고의로 측정기기를 훼손하는 행위
 -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10

◆ 다.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 대기배출시설 또는 폐수배출시설과 그에 딸린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대기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및 그에 딸린 방지시설 등을 운영시 금지행위

- 대기배출시설과 그에 딸린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금지행위 : 환경오염 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
- 폐수배출시설과 그에 딸린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금지행위 : 환경오염 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2호
- 그 밖에 대기배출시설 또는 폐수배출시설과 그에 딸린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함으로써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등을 배출하는 행위 금지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3호

◆ 라.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설치·관리기준 등 준수

- 배출시설등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등을 총체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기준, 오염물질등의 측정·조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기준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12

◆ 오염물질등의 측정·조사기준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13

◆ 마. 자가측정

-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오염물질등을 자가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고 측정 결과를 통합환경허가 시스템⁵²⁾에 입력하여야 하며, 자가측정을 할 때에 사용한 시료채취기록부 및 여과지를 측정한 날부터 6개월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제4항 및 별표 16, 제33조

◆ 오염물질등별 최소 자가측정 횟수

- 측정대상 오염물질등의 유해성 여부, 배출농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오염 물질별 최소 측정횟수 이상 측정하여야 함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배출구별		최소 측정횟수	배출구별		최소 측정횟수
먼지·황산 화물·질소 산화물의 발생량 합계	연간 80톤이상	분기 1회	폐수배출량	1일 2,000m ³ 이상	분기 1회
	연간 20톤이상	분기 1회		1일 700m ³ 이상	분기 1회
	연간 10톤이상	반기 1회		1일 200m ³ 이상	반기 1회
	연간 2톤 이상	매년 1회		1일 50m ³ 이상	매년 1회
	연간 2톤 미만	매년 1회		1일 50m ³ 미만	매년 1회

◆ 자가측정 대상 및 항목, 자가측정 제외항목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2항

52) 환경부장관은 허가 또는 변경허가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운영(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 바. 그 밖의 준수사항

-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및 제2항

◆ 기록·보존사항

-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

◆ 기록·보존방법

- 가동시간, 연료·원료·부원료 및 용수 사용량 등을 주기적으로 통합환경 허가시스템에 입력
- 기록·보존 대상자료의 범위 및 입력방법·주기, 입력한 자료의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⁵³⁾

- 아울러, 매년 7월 31일까지 지난 연도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한 후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제2항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및 제2항

◆ 연간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이행에 관한 사항
-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항

53)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7-44호)

II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거나 취급하는 기업

1. 화학물질 등록 및 신고	118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및 승인	133
3.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승인	140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인·허가 및 준수사항	154

화학물질 등록 및 신고



이 개 요

- ◆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 또는 연간 100kg 이상 신규화학물질 등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등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등록유예기간 동안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할 수 있으며, 등록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제조·수입하기 전에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신고대상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을 생산·수입하려는 경우 신고요건에 해당된다면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02 용어 설명

용어	내용
화학물질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혼합물	두가지 이상의 물질로 구성된 물질 또는 용액(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기존 화학물질	다음과 같은 화학물질(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1년 2월 2일 전에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화학물질 • 1991년 2월 2일 이후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신규 화학물질	기존화학물질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중점관리 물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 또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 사람 또는 동식물의 체내에 축적성이 높고, 환경 중에 장기간 잔류하는 물질 • 사람에게 노출되는 경우 폐, 간, 신장 등의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 사람 또는 동식물에게 위의 물질과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
유해성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위해성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



여기서 잠깐!!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범위

- **(관련 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 제2조제4호·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품외품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4.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
 6.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7.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8.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0.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
 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3.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제8호에 따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 참고 | 화학물질 정보확인 시스템 & 화학물질 등록 및 신고 등의 업무처리 시스템

■ 화학물질정보시스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유해물질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화학물질명 또는 CAS번호, 유해물질명을 입력하여 정보 검색

■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화학물질 등록 및 신고 등의 법적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처리 업무(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의 면제에 관한 업무
 - 변경등록·변경신고 등에 관한 업무
 -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 등에 관한 업무
 -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신고에 관한 업무
 -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 신청 등에 관한 업무
 -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에 관한 업무
 - 자료의 보호에 관한 업무

03 화학물질 등록

◆ 가. 화학물질 등록

① 기존화학물질

-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다만, 등록유예기간 동안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할 수 있는데, 등록을 유예받기 위해서는 제조·수입 전에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등록, 등록유예 및 신고 등 관련 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제10조의2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2 제1항·제2항·제4항

◆ 기존화학물질 등록유예기간

구분	연간 1톤이상 CMR ⁵⁴⁾ 물질 또는 연간 1천톤이상 제조·수입 물질	연간 100톤이상 제조·수입 물질	연간 10톤 이상 제조·수입 물질	연간 1톤이상 제조·수입 물질
유예 기간	2021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2027년 12월 31일	2030년 12월 31일

◆ 등록유예기간 동안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대상 및 제출 서류

구분	내용	
신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 명칭 • 화학물질 분류·표시 • 상호, 소재지 및 연락처 •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의 상호, 소재지 및 연락처(국외 제조·생산자⁵⁵⁾가 선임한자가 신고하는 경우) • 화학물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상호, 소재지 및 연락처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 	
변경신고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 무계범위(1톤이상/10톤이상/100톤 이상/1천톤이상) 변경 • 화학물질 분류·표시 변경 •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에 따른 용도 변경(새로운 소비자 용도가 확인되어 변경된 경우) • 상호, 소재지 또는 연락처 변경 등 	
제출 서류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자가 신고하는 경우) •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
	변경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변경신고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54)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존화학물질

55) 국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생산하고 있거나 제조·생산하려는 자가 선임한 자로서 국내에서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대신하여 등록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 이하 같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② 신규화학물질

- 연간 100kg이상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③ 등록대상 지정·고시 화학물질

- 위의 등록대상은 아니지만 등록대상으로 지정·고시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및 제2항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등록대상 화학물질 지정요건

-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이 다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개별 제조·수입자가 연간 100kg 미만으로 제조·수입하는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 : 1톤
 - 개별 제조·수입자가 연간 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하는 기존화학물질의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 : 10톤

◆ 등록대상 화학물질 지정·고시 절차

- 등록대상 화학물질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

◆ 등록시기

- 등록대상 화학물질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화학물질별 유해성, 위해성, 국내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

◆ 참고 | 등록신청서 제출 서류

■ 관련 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5항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제출 서류

- 화학물질 등록신청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항목별 시험자료⁵⁶⁾
-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⁵⁷⁾
- 화학물질의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⁵⁸⁾
- 현장분리중간체 및 수송분리중간체의 경우 엄격하게 통제된 조건하에서 이송·사용됨을 확인하는 서류
-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⁵⁹⁾
- 다음의 서류는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
 -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등록신청자료의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
 -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경우 : 시험항목별 시험계획서
 - 개별제출확인을 받은 경우 : 개별제출확인서 사본
 -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가 사용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부동의 확인소견서
 -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 :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 자료보호신청서
 -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 :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5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출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

5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

5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

5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의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



여기서 잠깐!!

◆ 등록신청시 제출자료 생략대상 및 생략 서류 범위 관련 규정

등록대상 화학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경우 해당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 기존화학물질 등록신청시 자료제출방법 : 공동제출

- **(관련 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내용)** 기존화학물질을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등록하려는 경우 각자 등록을 신청하되, 등록신청 자료 일부는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만, 개별 제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고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 있음

◆ 나. 화학물질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 화학물질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화학물질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2항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대상

구분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대상	신청(신고)시기
변경 등록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조·수입량의 무게 범위에서 상위의 무게 범위로 변경	변경사실 발생한 날부터 1개월
	화학물질의 용도분류체계 변경	변경사실 안 날부터 1개월
	화학물질의 구체적 용도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용도 확인	변경사실 안 날부터 1개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변경을 주는 화학물질의 특성·유해성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 확인	변경사실 안 날부터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화학물질의 위해성과 관련하여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새로운 정보 확인	변경사실 안 날부터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변경 신고	상호, 성명 또는 소재지 변경	변경된 날부터 1개월
	대표자(법인만 해당) 변경	변경된 날부터 1개월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해 선임된 자가 등록된 경우) 변경	변경된 날부터 1개월
	화학물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구성(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된 경우) 변경	변경된 날부터 1개월

◆ 제출 서류

구분	변경등록	변경신고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학물질 변경등록신청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사항이 발생한 사항과 관련된 자료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화학물질의 변경신고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04 화학물질 신고

◆ 가. 신규화학물질 신고

- 신고대상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제1항

◆ 신고대상 신규화학물질

- 연간 100kg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 다음의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성 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그 면제확인을 받은 바에 따라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 연간 100kg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⁶⁰⁾하는 신규화학물질

◆ 제출 서류

-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입사실 신고증(해당되는 경우)
- 자료보호신청서(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해당되는 경우)
-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 통지서(해당되는 경우)
-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위해성 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에 따른 서류 중 소유하고 있는 서류

60) 신고대상 고분자화합물질(환경부고시 제2018-234호)

◆ 나. 신규화학물질 변경신고

- 신규화학물질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

◆ 변경신고대상

구분	변경신고대상	신고시기
변경 신고	상호, 성명 또는 소재지 변경	변경사실 발생한 날부터 1개월
	대표자(법인인 경우) 변경	변경사실 발생한 날부터 1개월
	화학물질 용도체계가 변경되어 신고한 화학물질 용도 변경	변경사실 안 날부터 1개월
	신고한 화학물질 용도 중 소비자 용도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소비자 용도 확인	변경사실 안 날부터 1개월
	화학물질의 특성 또는 유해성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어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변경	변경사실 안 날부터 1개월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하여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정보 확인	변경사실 안 날부터 1개월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국외제조 생산자 에 의해 선임된 자가 신고한 경우) 변경	변경사실 발생 한 날부터 1개월
	화학물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구성(화학물 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 변경	변경사실 발생 한 날부터 1개월

◆ 제출 서류

-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변경신고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위해성 등의 자료 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에 따른 관련 서류 중 변경된 사항과 관련된 서류(신고 당시 동 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해당)
- 자료보호신청서(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 원본

여기서 잠깐!! | 화학물질 등록 또는 신고 면제

◆ 관련 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

◆ 화학물질 등록 또는 신고 면제 대상

- 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 시험운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 특정한 고체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 ② 위해성이 매우 낮은 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삼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⁶¹⁾하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 ③ 다음에 해당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을 받은 화학물질
 - i)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 ii)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한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 iii)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화학물질
 - iv)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 화학물질 또는 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 생산공정을 개선·개발하기 위한 경우
 -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61) 등록 또는 신고면제 대상 화학물질(환경부고시 제2018-234호)

v)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⁶²⁾

- 수평균분자량이 1만 이상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5퍼센트 미만이고, 분자량이 500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2퍼센트 미만인 고분자화합물
- 수평균분자량⁶³⁾이 1천 이상에서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25퍼센트 미만이고, 분자량이 500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10퍼센트 미만인 고분자화합물

■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고분자화합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 양이온성 고분자화합물(고체 상태로만 사용되고, 물에 녹지 아니하거나 분산되지 아니하는 고분자화합물은 제외)
- 수평균분자량이 1만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인 미반응 단량체⁶⁴⁾가 0.1중량퍼센트 이상 함유된 고분자화합물
 - 유해화학물질⁶⁵⁾
 - 중점관리물질
 - 신규화학물질(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것으로서 유해성심사를 받은 경우 제외)

vi)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과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이 모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 표면의 작용기(作用基)와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을 반응시켜 생성된 화학물질

- 등록된 화학물질
- 등록유예기간 이내의 기존화학물질로서 등록유예관련 신고된 화학물질
- 신고된 신규화학물질
- 등록대상 및 신고대상이 아닌 화학물질

vii) 비분리중간체⁶⁶⁾

viii) 기술적인 방법으로 유출 또는 노출이 차단되어 있는 현장분리중간체⁶⁷⁾

62) 고분자화합물의 정의 관련 규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63) 수평균분자량의 정의 관련 규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

64) 단량체의 정의 관련 규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

65)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을 말함(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66) 비분리중간체: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全量) 사용되어 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분리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67) 현장분리중간체: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통제된 조건 하에 동일한 제조현장의 후속 공정단계에서 전량 사용·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8호)

◆ 등록 또는 신고 면제 확인 신청

-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까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등록 또는 신고 면제 확인 변경신청

- 등록 또는 신고 면제 확인받은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의 변경이나 등록된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및 위해성 등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변경등록 신청 대상

- 연구개발용 화학물질로서 면제확인을 받은 사항 중 연구개발에 드는 기간, 제조·수입 예정량 또는 연구기관 변경
- 표면처리 대상 물질 또는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다른 목에 해당하는 화학물질로 변경
- 해당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 변경(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해 선임된 자가 신청한 경우)
- 해당 화학물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구성 변경(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한 경우)

05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

-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신고 요건에 해당한다면 해당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 정보, 노출정보,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용도에 대하여 생산 또는 수입전에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및 제2항

◆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 요건 :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제품 1개당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할 것
- 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할 것

◆ 신고 기간

- 제품에 함유(개별 제품의 0.1중량퍼센트 초과)된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기 전까지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 기간 예외 적용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별 총량을 확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기 전에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인적사항 및 사유 등을 신고한 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 서류

-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제품 사용설명서
- 제품 사진
- 다음의 서류는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 자료보호신청서
 -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 :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 기간 예외 적용 받은 경우 : 인적사항 및 사유 등 신고한 내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및 승인



II



01 개요

- ◆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 하려는 경우에는 시험·검사기관의 적합여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 하려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02 용어 설명

용어	내용																												
화학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생활화학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⁶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부장관이 위해성 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⁶⁹⁾한 생활화학제품(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table border="1"> <thead> <tr> <th>분류</th> <th>품목</th> </tr> </thead> <tbody> <tr> <td>세정제품</td> <td>1.세정제 2.제거제</td> </tr> <tr> <td>세탁제품</td> <td>1.세탁세제 2.표백제 3.섬유유연제</td> </tr> <tr> <td>코팅제품</td> <td>1.광택 코팅제 2.특수목적코팅제 3.녹 방지제 4.다림질보조제</td> </tr> <tr> <td>접착·접합제품</td> <td>1.접착제 2.접합제</td> </tr> <tr> <td>방향·탈취제품</td> <td>1.방향제 2.탈취제</td> </tr> <tr> <td>염색·도색제품</td> <td>1.물체 염색제 2.물체 도색제</td> </tr> <tr> <td>자동차 전용 제품</td> <td>1.자동차용 워셔액 2.자동차용 부동액</td> </tr> <tr> <td>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td> <td>1.인쇄용 잉크·토너 2.인주 3.수정액 및 수정테이프</td> </tr> <tr> <td>미용제품</td> <td>1.미용 접착제 2.문신용 염료</td> </tr> <tr> <td>살균제품</td> <td>1.살균제 2.살조제 3.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4.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5.기타 방역용 소독제제</td> </tr> <tr> <td>구제제품</td> <td>1.기피제 2.보간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3.보간용 기피제 4.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5.감염병 예방용 살서제</td> </tr> <tr> <td>보존·보존처리제품</td> <td>1.목재용 보존제 2.필터형 보존처리제품</td> </tr> <tr> <td>기타</td> <td>1.초 2.습기제거제 3.인공 눈 스프레이 4.공연용 포그액 5.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td> </tr> </tbody> </table>	분류	품목	세정제품	1.세정제 2.제거제	세탁제품	1.세탁세제 2.표백제 3.섬유유연제	코팅제품	1.광택 코팅제 2.특수목적코팅제 3.녹 방지제 4.다림질보조제	접착·접합제품	1.접착제 2.접합제	방향·탈취제품	1.방향제 2.탈취제	염색·도색제품	1.물체 염색제 2.물체 도색제	자동차 전용 제품	1.자동차용 워셔액 2.자동차용 부동액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1.인쇄용 잉크·토너 2.인주 3.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미용제품	1.미용 접착제 2.문신용 염료	살균제품	1.살균제 2.살조제 3.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4.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5.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구제제품	1.기피제 2.보간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3.보간용 기피제 4.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5.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보존·보존처리제품	1.목재용 보존제 2.필터형 보존처리제품	기타	1.초 2.습기제거제 3.인공 눈 스프레이 4.공연용 포그액 5.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분류	품목																											
	세정제품	1.세정제 2.제거제																											
	세탁제품	1.세탁세제 2.표백제 3.섬유유연제																											
	코팅제품	1.광택 코팅제 2.특수목적코팅제 3.녹 방지제 4.다림질보조제																											
	접착·접합제품	1.접착제 2.접합제																											
	방향·탈취제품	1.방향제 2.탈취제																											
	염색·도색제품	1.물체 염색제 2.물체 도색제																											
	자동차 전용 제품	1.자동차용 워셔액 2.자동차용 부동액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1.인쇄용 잉크·토너 2.인주 3.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미용제품	1.미용 접착제 2.문신용 염료																												
살균제품	1.살균제 2.살조제 3.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4.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5.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구제제품	1.기피제 2.보간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3.보간용 기피제 4.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5.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보존·보존처리제품	1.목재용 보존제 2.필터형 보존처리제품																												
기타	1.초 2.습기제거제 3.인공 눈 스프레이 4.공연용 포그액 5.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위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 또는 살생물물질이 노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6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서 제외(이하 같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단서)

69)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19-45호)

여기서 잠깐!!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범위

◆ 관련 규정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 제5조(적용 범위) ①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한다)
 3.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제1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
 4.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
 5. 「사료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미사료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보조사료
 6. 「선박평형수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처리물질
 7.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8.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의약품 외품 및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의약품 외품
 9.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0.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의료기기
 11.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 ②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또는 제3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학적 실험용·분석용 또는 연구용인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제품인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3. 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제품에만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5. 그 밖에 국내에 판매되지 아니하는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 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물질승인, 제품승인·관리, 정보의 공개 및 자료의 보호 등)



0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

◆ 가. 안전기준 적합확인

- 안전기준이 고시⁷⁰⁾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합니다.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은 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 종료 후에도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시험·검사기관 제출 서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
-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⁷¹⁾하는 화학물질의 성분, 배합 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용기 검사결과 합격 증명서류(고압가스를 이용한 스프레이형 제품만 해당)
-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준수 증명서류(해당되는 경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확인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재확인 신청의 경우)

70)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19-45호)

7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19-45호)



◆ 참고 |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 및 살생물제 승인 등 시험·검사기관

■ 관련 규정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제2항

■ 대상

- 환경부장관은 다음 기관을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확인 및 살생물제 승인 등을 위한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한국환경공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시험·검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 한국의료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FTT시험연구원, KOTIT시험연구원

◆ 나. 안전기준 적합확인 제품 신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품 정보·성분·함량 등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⁷²⁾에는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제5항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및 제4항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

◆ 신고 시기

-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7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안전기준에 규정된 사항이 변경되어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

◆ 신고 사항

-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 제품명, 제형, 중량·용량·매수
-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의 제품정보
-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기준⁷³⁾에 따라 표시한 표시견본

◆ 제출 서류

구분	신고	변경신고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서(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결과서 사본 •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 제품 정보에 관한 서류 •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기준 적합확인 변경신고서(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원본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 참조

0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 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제출 서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되어 해당 제품의 주된 기능을 하는 화학 물질에 관한 다음 자료
 - 화학물질의 명칭, 분자식·구조식 등 화학물질의 식별 정보
 - 화학물질의 용도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 화학물질의 유해성
 - 화학물질의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를 포함한 위해성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다음 자료
 - 효과·효능
 - 해당 제품의 유해성
 - 해당 제품의 성분 분석에 관한 시험·검사의 기준 및 방법
 - 해당 제품의 안전성, 폭발·화재·누출시 응급조치사항 및 보호구 등 제품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자료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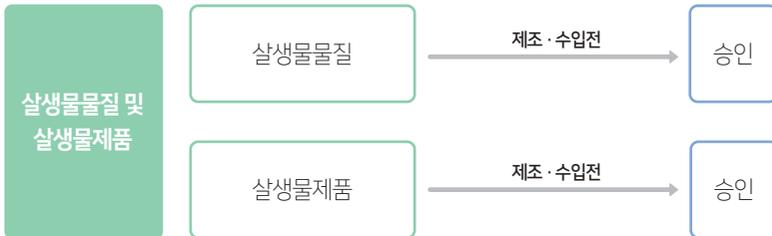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승인



이 개 요

- ◆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살생물물질에 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02 용어 설명

용어	내용																										
화학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살생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을 말함(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살생물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 또는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 																										
살생물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제품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p style="text-align: center;">살생물제품유형 분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분류</th> <th>살생물제품유형</th> <th>분류</th> <th>살생물제품유형</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살균제류 (소독제류)</td> <td>(1)살균제</td> <td rowspan="2">보존제류 (방부제류)</td> <td>(8)제품보존용 보존제</td> </tr> <tr> <td>(2)살조제</td> <td>(9)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td> </tr> <tr> <td rowspan="5">구제제류</td> <td>(3)살서제</td> <td rowspan="4">기타</td> <td>(10)섬유 가죽류용 보존제</td> </tr> <tr> <td>(4)기타 척추동물 제거제</td> <td>(11)목재용 보존제</td> </tr> <tr> <td>(5)살충제</td> <td>(12)건축자재용 보존제</td> </tr> <tr> <td>(6)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td> <td>(13)재료 장비용 보존제</td> </tr> <tr> <td>(7)기피제</td> <td>(14)사체 박제용 보존제</td> </tr> <tr> <td></td> <td></td> <td></td> <td>(15)선박 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td> </tr> </tbody> </table>	분류	살생물제품유형	분류	살생물제품유형	살균제류 (소독제류)	(1)살균제	보존제류 (방부제류)	(8)제품보존용 보존제	(2)살조제	(9)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구제제류	(3)살서제	기타	(10)섬유 가죽류용 보존제	(4)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11)목재용 보존제	(5)살충제	(12)건축자재용 보존제	(6)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13)재료 장비용 보존제	(7)기피제	(14)사체 박제용 보존제				(15)선박 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분류	살생물제품유형	분류	살생물제품유형																								
살균제류 (소독제류)	(1)살균제	보존제류 (방부제류)	(8)제품보존용 보존제																								
	(2)살조제		(9)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구제제류	(3)살서제	기타	(10)섬유 가죽류용 보존제																								
	(4)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11)목재용 보존제																								
	(5)살충제		(12)건축자재용 보존제																								
	(6)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13)재료 장비용 보존제																								
	(7)기피제	(14)사체 박제용 보존제																									
			(15)선박 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살생물처리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 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 																										
유해생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람이나 동물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주는 생물(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 																										
위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 또는 살생물물질이 노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여기서 잠깐!!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범위

◆ 관련 규정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적용 범위) ①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한다)
 3.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제1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
 4.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
 5. 「사료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미사료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보조사료
 6. 「선박평형수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처리물질
 7.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8.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의약품외품 및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의약품외품
 9.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0.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의료기기
 11.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 ②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또는 제3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학적 실험용·분석용 또는 연구용인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제품인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3. 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제품에만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5. 그 밖에 국내에 판매되지 아니하는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 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물질승인, 제품승인·관리, 정보의 공개 및 자료의 보호 등)

03 살생물질 승인

◆ 가. 살생물질 승인

- 살생물질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살생물물질에 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다만,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살생물물질은 승인대상에서 제외
- 아울러, 살생물물질 승인 유효기간 종료 후에도 해당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 제13조제1항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2항

◆ 승인 유효기간

구분	유효기간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질승인의 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살생물물질 • 호흡기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는 살생물물질이면서 잔류성, 생축적성, 독성 중 둘 이상 성질을 가진 살생물물질 	5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질승인의 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살생물물질 • 호흡기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는 살생물물질 • 잔류성, 생물축적성, 독성 중 둘 이상 성질을 가진 살생물물질 	7년
일반적인 살생물물질	10년

◆ 제출 서류

- 살생물물질 승인 신청서(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 등 식별정보
- 살생물물질에 관한 다음 자료
 -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 살생물물질의 용도, 주요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
 - 인체·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위해성 정보
 - 효과·효능
 - 분류 및 표시
 - 취급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
-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과정
- 살생물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위해성 평가 포함)

◆ 참고 | 물질승인기준 및 기준완화 적용대상

■ 관련 규정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제3항

■ 물질승인기준

- 살생물물질 또는 그 잔류물이 사람·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닐 것
- 살생물물질의 유해생물 제거등의 효과효능이 충분할 것
- 살생물물질이 제거등의 목적이 되는 유해생물에게 내성(耐性)이 생기게 하지 아닐 것
- 살생물물질이 척추동물의 제거등을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제거등의 과정에서 척추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지 아닐 것

■ 물질승인 기준완화 적용대상

- 물질승인 대상 살생물물질의 사용목적 및 용도가 제한되어 사람 또는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작은 경우
- 물질승인 대상 살생물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유해성이 낮은 물질이 없어 해당 살생물물질의 사용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에 필요한 경우



◆ 참고 | 살생물물질 승인신청 제출자료 생략대상

■ 관련 규정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제출자료 생략 대상

- 살생물물질의 사용목적과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유형을 고려할 때 노출정보가 특정되어 인체·동물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 과학적으로 자료의 제출이 필요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나. 기존살생물물질⁷⁶⁾ 승인유예

-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 승인유예기간 동안에는 물질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동 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이처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질로 지정받으려면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위의 신고를 하여 해당 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고시 되는 경우 승인유예기간 동안에는 물질 승인을 받지 않고 기존살생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고시 후 1년 이내에 살생물물질 승인신청계획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⁷⁷⁾하여 유예기간 내에 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19조제1항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1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제2항

76)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

77) 명칭, 화학적 조성 및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 유형이 동일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하여 살생물 물질 승인신청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둘 이상일 경우 각자 승인을 신청하되, 일부 자료는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만,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개별로 제출할 수 있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 승인유예기간

구분	승인유예기간
기존살생물물질 신고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고시한 경우	해당 살생물물질의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라 승인유예기간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기존살생물물질 신고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고시하지 않은 경우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날

◆ 신고 사항

- 제조 또는 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 기존살생물물질의 명칭, 화학적 조성 및 제조(수입)량
- 기존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 기존살생물물질의 순도 범위
- 기존살생물물질의 상세 용도
- 기존살생물물질의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

◆ 제출 서류

-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 신고서(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기존살생물물질의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에 관한 서류
-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다. 살생물물질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 승인받은 살생물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 효과·효능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살생물물질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대상

구분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대상
변경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생물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 변경 • 살생물물질의 효과·효능 변경 • 살생물물질의 명칭 변경 • 살생물물질의 제조시설 소재지 변경 • 살생물물질의 용도 변경 • 살생물물질의 제조 공정 등 제조방법 변경 • 살생물물질이 유지하여야 하는 순도 범위 변경 • 살생물물질에 함유가 허용되는 불순물 특성 및 함량 범위 변경 •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변경 • 살생물물질의 사용자 범위 변경
변경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변경 등 그 밖의 승인사항 변경

◆ 제출 서류

구분	변경승인	변경신고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생물물질 변경승인신청서(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 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생물물질 승인 변경신고서(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 원본

◆ 참고 | 살생물물질 동등성 인정

■ 관련 규정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32조 제1항제2호

■ 제출자료 생략 대상

- 물질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과 다른 살생물물질 간에 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동등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동등성 인정 신청을 하여야 함.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이미 제출한 자료의 경우 해당 자료의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활용할 수 있음

04 살생물제품 승인

◆ 가. 살생물제품 승인

-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살생물제품 승인 유효기간 종료 후에도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5항 및 제6항, 제21조제1항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 승인 유효기간

구분	유효기간
<p>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 살생물제품 승인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살생물제품 • 살생물물질 승인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살생물물질 또는 호흡기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는 살생물물질 등 생활화학제품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살생물제품</p>	3년



구분	유효기간
<p>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생물제품 승인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살생물제품 • 살생물물질 승인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살생물물질 또는 호흡기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는 살생물물질 등 생활화학제품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살생물제품 	5년
<p>그 외 일반적인 살생물제품</p>	10년

◆ **제출 서류**

- 살생물제품 승인 신청서(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물질에 관한 다음 자료
 -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 비율, 사용 목적 및 용도
 -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공급자명 및 주소
 -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나노물질의 명칭, 사용목적 및 용도(나노물질을 의도적으로 함유한 경우)
- 살생물제품에 관한 다음 자료
 -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 살생물제품의 용도, 주요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
 - 인체·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위해성 정보
 - 효과·효능
 - 분류·표시 및 포장
 - 사용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
- 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공정
- 살생물제품의 취급 또는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⁷⁸⁾에 따른 안전용기 또는 포장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살생물제품 품질을 승인받은 대로 유지하기 위한 기준⁷⁹⁾에 적합한 제조·보관시설의 설치·운영계획 또는 현황
- 살생물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

7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6호

7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7항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살생물제품 승인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는 경우 : 법 제2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살생물제품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⁸⁰⁾받으려는 경우 :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부동의에 관한 확인을 받은 경우 :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결과서 사본
 - 살생물제품 승인 재신청시 기 제출자료와 내용이 동일한 경우 :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참고 | 살생물제품 승인유예기간

■ 관련 규정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법률 제17103호, '20.3.24. 일부 개정, 시행일 : '21.1.1.)

■ 승인유예기간

-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승인유예기간 종료일까지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음

구분	승인유예기간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인 경우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종료일 ⁸¹⁾ 부터 2년 이내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었으나 그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제조·수입이 금지되거나 승인유예대상 기존 살생물물질 지정이 해제된 경우	제조·수입금지일 또는 지정해제일 중 가장 먼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위의 살생물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품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8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81) 승인유예기간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 함유된 경우에는 해당 살생물제품의 유형으로 지정·고시된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종료일 중 마지막에 도래하는 종료일

◆ 나. 살생물제품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 효과·효능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살생물제품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

◆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대상

구분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대상
변경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생물제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 변경 • 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 변경 •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및 살생물제품 유형 변경 • 살생물제품의 사용 대상자 및 사용 범위 변경 • 해당 살생물제품이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살생물처리제품의 종류 및 사용방법 변경 •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생물물질 - 유해화학물질 - 중점관리물질 •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 중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제외한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살생물제품의 분류·표시가 함께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변경 • 살생물제품에 관한 다음 사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형 - 표준 사용량과 사용방법 - 유통기한 - 사용상 주의사항 - 용도
변경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변경 등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제출 서류

구분	변경승인	변경신고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생물제품 변경승인신청서(생활 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생물제품 승인 변경신고서(생활 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원본

여기서 잠깐!! | 살생물제품 승인의 특례

◆ 관련 규정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제품승인 특례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살생물제품

-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생활 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살생물물질일 것
-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 중 살생물물질이 아닌 물질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중점관리물질
 - 나노물질
 - 유해화학물질 또는 잔류성오염물질
- 유해생물 제거 등에 효과·효능이 충분할 것
- 취급하거나 사용할 때 개인보호장비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

◆ 제품승인 특례 절차

특례 대상 살생물제품에 대한 제품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 제품 승인 특례신청서(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 살생물제에 함유된 물질에 관한 다음 자료
 - 살생물제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사용 목적 및 용도
 - 살생물제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의 공급자명 및 주소
- 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 살생물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 살생물제품의 취급 또는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⁸²⁾에 따른 안전용기 또는 포장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살생물제품 품질을 승인받은 대로 유지하기 위한 기준⁸³⁾에 적합한 제조·보관시설의 설치·운영계획 또는 현황
- 살생물제품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살생물제품 승인 특례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참고 | 살생물제품 유사성 인정

■ 관련 규정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제32조 제1항제4

■ 주요 내용

-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과 다른 살생물제품 간에 유사성을 인정 받으려는 경우에는 유사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유사성 인정 신청을 하여야 함.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이미 제출한 자료의 경우 해당 자료의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활용할 수 있음

8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6호

8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7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인·허가 및 준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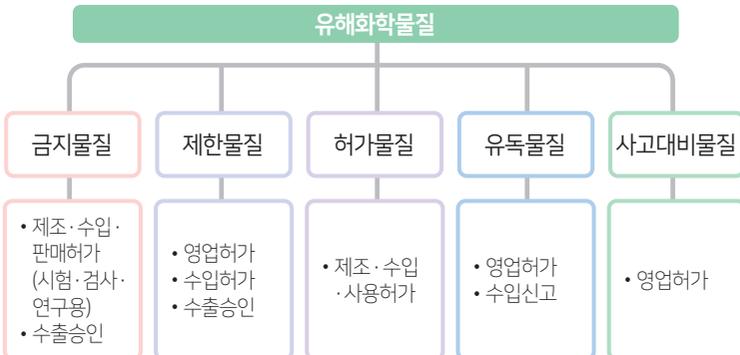


이 개 요

-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유해화학물질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취급기준, 개인보호장구 착용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검사 및 안전진단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정기적으로 고지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는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로 통합 예정 (2021.4.1. 시행)

유해화학물질 영업 등 인허가



02 용어 설명

용어	내용
화학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호)
유독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유독물질 지정기준⁸⁴⁾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허가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
제한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⁸⁵⁾한 것(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
금지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⁸⁶⁾한 것(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5호)
사고대비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⁸⁷⁾한 것(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
유해화학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

8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85)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18-139호)

86)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18-139호)

87) 사고대비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17-107호)



용어	내용
유해화학물질 영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에 대한 영업을 말함(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8호)
유해성	•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9호)
위해성	•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0호)
취급시설	•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1호)
취급	•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2호)
화학사고	•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3호)

여기서 잠깐!! |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범위

◆ 관련 규정

•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 제2조제4호·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4.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
6.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7.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8.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0.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 (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
 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에 따른 독성가스
- ② 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부터 제23조까지(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3조,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는 제외한다), 제26조,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제49조제1항제7호·제8호 및 제50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제52조, 제54조부터 제64조까지(제54조제8호부터 제13호까지, 제58조제4호·제5호, 제59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59조제11호, 제61조제4호, 제6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64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적용한다
- ③ 제1항제2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의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하여 관계법률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

◆ 참고 | 화학물질 확인

■ 주요 내용

-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을 확인하고 확인명세서 등을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⁸⁸⁾에 제출하여야 함
- 화학물질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에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에 대한 증명을 신청할 수 있음

88)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 이하 같음

■ 관련 규정

-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

■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확인대상 물질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 유독물질
- 허가물질
- 제한물질
- 금지물질
- 사고대비물질

■ 확인 제외 대상

-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⁸⁹⁾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외

■ 제출 서류

구분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화학물질 확인증명 신청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다음 서류 중 화학물질 확인에 이용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명, 화학 물질의 함량, CAS(Cheical Abstracts Service) 번호 등을 적은 서류 - 제조자 · 수출자 또는 확인을 위임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확인 관련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 확인 증명신청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화학물질 확인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 물질의 명칭, 화학물질의 함량, CAS번호 등이 적힌 성분명세서

89) 화학물질 제외 확인기준(환경부고시 제2015-162호)

0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준수사항

◆ 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관리할 것
- 유해화학물질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와 약품을 갖추어 둘 것
-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하여 보관·저장하지 말 것
-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 운반자·작업자 외에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지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일 것
- 그 밖에 위의 기준에 준하는 사항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⁹⁰⁾으로 정하는 사항

◆ 나. 개인보호장구 착용

- 기체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90)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

◆ 관련 규정

- 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 개인보호장구 착용 대상

- 기체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 액체 유해화학물질에서 증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고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에서 분말이나 미립자 형태 등이 체류하거나 비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실험실 등 실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 유해화학물질을 다른 취급시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
- 흡입독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적재하는 경우
-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정비·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⁹¹⁾하는 경우

◆ 다. 유해화학물질 진열·보관계획서 제출

- 유해화학물질을 일정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진열·보관계획서를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열하거나 보관할 수 없습니다

◆ 관련 규정

-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제2항

◆ 진열·보관계획서 제출 대상

- 유독물질 : 500kg 초과
-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 : 100kg 초과

◆ 제출 서류

- 유해화학물질 진열·보관계획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91)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7호)



◆ 라.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제출

- 1회에 일정량을 초과하여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운반계획서를 작성하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운반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운반자, 운반기사 또는 호송자가 운반계획서 사본을 휴대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3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운반계획서 제출 대상

- 유독물질 : 5,000kg 초과
-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 : 3,000kg 초과

◆ 제출 서류

-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마. 유해화학물질 표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용기나 포장 등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제2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유해화학물질 표시 대상

-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과 진열·보관장소
-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컨테이너, 이동식 탱크로리 등 포함)
- 유해화학물질 용기·포장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⁹²⁾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9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른 규모미만 시설은 제외

◆ 유해화학물질 표시 내용

- 명칭 : 유해화학물질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 그림문자 :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 신호어 :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 유해·위험문구 :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 예방조치 문구 :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를 나타내는 문구
- 공급자정보 :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법인의 경우 명칭)·전화번호·주소 등에 관한 정보
- 국제연합번호 : 유해위험물질 및 제품의 국제적 운송보호를 위하여 국제 연합이 지정한 물질분류번호

◆ 유해화학물질 표시 방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및 별표 2 참조

04 유해화학물질 허가 및 신고

◆ 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허가

- 누구든지 금지물질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으로 제조·수입·판매하기 위하여 유역 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

구분	변경허가	변경신고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받은 금지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변경 • 허가받은 예정 물량(100분의 20 이상 증가) •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100분의 20이상 증가) • 허가받은 금지물질 용도 변경 • 사업장 소재지(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명칭, 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 제출 서류

구분	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허가신청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금지물질 사용·판매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변경 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허가증 원본

◆ 나.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허가

-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물질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유역 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물질의 용도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공동으로 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제출 서류

-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허가신청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 화학물질 용도 상세내역
- 화학물질 위해성 자료
- 대안분석 및 실행가능성 자료
- 대체 계획 자료

여기서 잠깐!! | 허가면제 대상 허가물질

◆ 관련 규정

-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제2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9조

◆ 허가면제 대상

-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 특정한 고체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 조사용·연구용으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
- 연간 100kg이하로 제조, 수입 또는 사용되는 화학물질

◆ 다. 제한물질 수입허가

- 누구든지 제한물질을 사용이 제한된 용도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제한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한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적절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지방 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아울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4항, 제20조제1항 및 제4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

구분	변경허가	변경신고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받은 금지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변경 • 허가받은 예정 물량(100분의 50 이상 증가) •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100분의 50이상 증가) • 허가받은 제한물질 용도 변경 • 사업장 소재지(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명칭, 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

구분	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물질 수입허가신청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 제한물질 용도 상세내역서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사본(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물질 수입 변경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허가증 원본

여기서 잠깐!! | 허가면제 대상 제한물질

◆ 관련 규정

-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3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0조

◆ 수입허가면제 대상 제한물질

-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측정기기의 측정·교정용으로 사용되는 표준 가스 포함)

◆ 라. 유독물질 수입신고

-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유독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제4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 변경신고 대상

- 신고한 유독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변경
- 신고한 수입 예정물량(100분의 50이상 증가시)
- 신고한 유독물질 용도 변경
- 사업장 명칭, 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변경

구분	신고	변경신고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독물질 수입신고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유독물질 성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독물질 수입 변경신고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신고증 원본

여기서 잠깐!! | 신고면제 대상 유독물질

◆ 관련 규정

-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3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0조

◆ 신고면제 대상 유독물질

-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측정기기의 측정·교정용으로 사용되는 표준 가스 포함)
- 연간 100kg이하의 유독물질 수입

◆ 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수출승인

- 제한물질(취급이 제한된 용도에 한함) 또는 금지물질을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수출통보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에게 매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승인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제1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

◆ 변경승인 대상

구분	변경승인 대상	신청시기
내용	승인받은 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변경전
	승인받은 수출 예정수량(100분의 50 이상 증가시)	변경전
	사업장 명칭, 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변경사유 발생한 날부터 30일

◆ 제출 서류

구분	승인	변경승인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승인 신청서(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 로테르담협약⁹³⁾ 부속서 V에 규정된 수출통보서 • 물질안전보건자료 • 수출자 책임보증서⁹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 변경승인신청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수출승인서 원본

93) 1998년 9월 10일 네덜란드 로테르담 외교회의에서 채택하고 2004년 2월 24일 정식으로 발효됨. 특정화학 물질과 농약이 인류의 건강과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교환을 촉진하고 수출입에 관한 각국의 절차를 규정

94) 로테르담협약 부속서 III에 규정된 화학물질인 경우에는 수출자 책임보증서만 제출



0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운영

◆ 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제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⁹⁵⁾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등에는 사전에 화학 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이하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장외영향평가서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⁹⁶⁾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제4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3항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대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하여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 동일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을 증설하는 경우
 - 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는 경우

◆ 제출 서류

- 장외영향평가서 검토신청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 장외영향평가서⁹⁷⁾

◆ 참고 | 장외영향평가서 간이 작성 대상

■ 관련 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9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은 제외, 이하 같음

96)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

97) 장외영향평가서 작성방법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및 별표 4 참조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규모 미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로서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표 제3호의 내용만 작성한 장외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음

◆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설치·운영되어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1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기준

- 외벽부터 건축물의 경계 또는 생태·경관보호지역의 경계까지 환경부장관이 고시⁹⁸⁾하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배치되어야 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및 별표 5 참조

여기서 잠깐!!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특례

◆ 관련 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

◆ 특례 적용대상

-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

98)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환경부고시 제2018-23호)

-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기 위한 사업장의 물리적 공간이 부족하여 대규모의 이설이 불가피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취급시설
- 취급시설의 설치에 관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어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안전성 평가 신청방법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안전성 평가 신청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5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를 마친 경우에는 검사기관⁹⁹⁾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별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9-157호) 제6조제3항

◆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면제대상

-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 제외)
-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99)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 검사종류 및 검사시기

구분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검사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시설 가동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설치검사결과서의 검사일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비대상: 설치검사결과서의 검사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최종 안전진단일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비대상: 최종 안전진단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학사고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유역 환경청장·지방 환경청장에게 수시검사 대상임을 통지받은 경우

◆ 제출서류

구분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검사결과 신고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취급시설 검사결과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정기검사 결과 신고서(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취급시설 검사결과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수시검사 결과 신고서(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취급시설 검사결과서

◆ 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를 마치거나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안전진단 실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기관¹⁰⁰⁾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취급시설의 안전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유역 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0)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 관련 규정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5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안전진단 실시 요건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균열부식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 되는 경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후 장외영향평가서 검토결과서의 취급 시설별 위험도를 기준으로 일정 기준을 경과한 경우
 - 고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장외영향평가서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4년(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이내)
 - 중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장외영향평가서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8년(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이내)
 - 저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장외영향평가서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12년(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이내)
 - 취급시설 위험도에 대한 검토결과가 없는 경우 : 매 4년(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이내)

◆ 제출 서류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결과신고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결과서

◆ 마. 자체 점검 및 기록·보존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¹⁰¹⁾하는 경우 주 1회 이상 해당 취급 시설 또는 장비 등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여야 합니다

101) 가동중단 또는 휴업 중인 경우도 포함



◆ 관련 규정

- 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제1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자체 점검 내용

- 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제2항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참조

◆ 기록·비치 방법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에 기록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쉽게 볼 수 있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비치

06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 가.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제28조제2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제3항 및 별표 6

◆ 유해화학물질 영업 구분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에 대한 영업

-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 영업

-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전(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하는 영업
-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 제출 서류

-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신청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에 대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장외영향평가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적합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
-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명세서(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평면배치도 등)
- 유해화학물질 장비·기술인력 명세서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또는 그 사본(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
-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다음 어느 하나의 서류(외국인인 경우)
 -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 공증인이 공증하고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신청인 진술서
 -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공관의 영사관이 인증한 사서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 참고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결격사유

■ 관련 규정

- 화학물질관리법 제30조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임원 중에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여기서 잠깐!!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 관련 규정

-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 면제 대상

-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
-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¹⁰²⁾,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
- 항만, 역구내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경우
- 한 번에 1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경우
-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사고대비물질 제외)을 사용하는 경우. 다만, 사업장이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60톤 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지정된 구역 제외) 또는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240톤 이하
-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60톤 이하의 제한물질(사고대비물질 제외)을 사용하는 경우
- 사고대비물질(유독물질이 아닌 것에 한정)을 사용하는 자 중 다음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서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102)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3제1항)

- 장외영향평가서¹⁰³⁾ 제출 대상
-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
-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없다고 인정하여 고시¹⁰⁴⁾하는 경우

◆ 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항목 일부 생략 대상은 제외

104)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46호)

◆ 관련 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및 제2항

◆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대상

구분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	신청(신고)시기
변경 허가	업종별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 (100분의 50이상 증가)	변경전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100분의 50이상 증가)	변경전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 추가 ¹⁰⁵⁾	변경전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항목 중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동일한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 증설,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 위치 변경,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변경 등의 사유로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¹⁰⁶⁾)	변경전
	사업장 소재지 변경(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	변경전
변경 신고	사업장 명칭, 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변경	변경된 날부터 30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항목 중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로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었으나 시범생산용인 경우(시범생산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	변경전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항목 중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되었으나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지 아니하는 경우(동일한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 증설,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 위치 변경,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변경 등의 사유인 경우에만 해당)	변경된 날부터 30일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대수 또는 용량 증가	변경된 날부터 30일
	기술인력 변경	변경된 날부터 60일

105) 장외영향평가서 작성항목 중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로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었으나 시범 생산용(6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

106) 장외영향평가서 작성항목 중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로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었으나 시범 생산용(6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



◆ 제출 서류

구분	변경허가	변경신고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신청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추가되었으나, 화학사고 발생시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외평가정보변경검토서로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를 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 시범생산계획서(시범생산용인 경우)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또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 확인한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화학사고 발생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 포함)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전¹⁰⁷⁾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도급인 의무사항

- 다음과 같은 유해화학물질을 적정하게 취급할 수 있는 능력과 기준을 갖춘 자에게 도급하여야 함

107) 화학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업무의 수행을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



- 개인보호장구를 준비할 것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할 것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할 것
- 위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능력과 기준을 맞출 것
- 해당 수급인을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수급인에게 다음과 같은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됨
 - 도급계약 등에서 정한 공사보수기간의 단축
 - 심야시간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사·보수, 다만,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게 공사 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
 - 화학사고 발생 우려에 따른 수급인의 정당한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및 취급시설의 공사보수·운영의 지시
 - 화학사고 발생 사실 또는 발생 우려 은폐
 - 위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사항

◆ 변경신고 대상

-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 도급 대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 도급기간

◆ 제출 서류

구분	신고	변경신고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 신청인·도급인·수급인의 주요 생산품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자료 • 도급 계획서(도급대상 작업의 개요, 도급사유, 수급인이 보유한 개인보호장구 명세서, 수급인의 취급시설 및 인력 명세서, 수급인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 • 화학사고 안전관리 계획서 • 긴급 도급 사유서(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변경 신고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2서식) • 변경된 도급계획서 •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변경된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 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에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수 등의 기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선임¹⁰⁸⁾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3호)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기준

구분		세부 기준				
선임 기준	유해화학물질관리책임자	-	1명(다만,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이 책임자 겸임 가능)			
	유해화학물질관리점검원	운반업	운반차량 20대당 1명 ※ 운반차량이 20대 이하인 경우 면제			
		그 외 영업	구분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천톤미만	만톤미만	십만톤미만	백만톤미만
	인원 (명)	1	2	3	4	5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선임하여야 함 ▶ 제조업, 보관·저장업, 판매업(취급시설 없는 경우 제외): 종사자 500명당 1명 추가 ▶ 사용업: 종사자 5천명당 1명 추가				

108)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탁·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수탁관리자가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2항)



구분	세부 기준
<p>자격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공안전기술사 · 화공기술사 · 가스기술사 · 대기관리기술사 · 수질관리기술사 · 폐기물처리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 화공기사 · 산업안전기사 · 가스기사 · 수질환경기사 · 대기환경기사 · 폐기물처리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증 소지자 • 산업안전산업기사 · 수질환경산업기사 · 대기환경산업기사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 위험물산업기사 · 가스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 가스기능사 · 환경기능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화학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32시간 이상 받은 자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32시간 이상 받은 자 • 화학물질 취급 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32시간 받은 자 • 가스기능장 또는 위험물기능장 자격증 소지자 • 유독물취급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취급시설이 없는 경우)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8시간 이상 받은 자

◆ 참고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지체없이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함.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음(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3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여기서 잠깐!!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 공동활용 승인

◆ 관련 규정

- 화학물질관리법 제38조제1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 주요 내용

- 같은 부지나 건축물에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는 둘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제출 서류

- 유해화학물질관리자·취급시설 공동활용 승인신청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 공동활용계획서
- 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련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 개별업소 명세 및 위치도
- 개별업소 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권리·의무 등의 협약서
- 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업무대행자 지정 명세서

07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받은 사업장의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등은 안전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및 별표 6의2
-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47호)

◆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시간

	구분	교육시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 기술인력	-	매 2년마다 16시간
	판매업(취급시설이 없는 경우)	매 2년마다 8시간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그 외 영업	매 2년마다 16시간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자 중 유해화학물질 직접 취급자	매 2년마다 16시간 (운반자는 매 2년마다 8시간)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자 중 유해화학물질 직접 취급자	매 2년마다 16시간 (운반자는 매 2년마다 8시간)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매 2년마다 16시간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담당자	매 2년마다 16시간
		매 2년마다 16시간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¹⁰⁹⁾에 대하여 안전교육 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온라인 교육 포함)을 매년 1회, 2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3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109)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대상자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는 제외

◆ 참고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기관

■ 관련 규정

-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 안전교육기관

- 화학물질안전원
-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
-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안전교육의 전문성에 관한 평가 결과 안전교육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¹¹⁰⁾하는 전문기관

08 사고대비물질 취급시 준수사항

◆ 가.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준수

- 사고대비물질을 취급¹¹¹⁾하는 경우에는 외부인 출입관리기록 등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화학물질관리법 제40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 9

◆ 나.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 사고대비물질을 일정 수량¹¹²⁾ 이상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¹¹³⁾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위해관리계획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0)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3호)

111) 취급시설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인 경우는 제외, 이하 같음

11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10에서 규정

113)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출(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제2항)

**◆ 관련 규정**

-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 위해관리계획서 변경제출 대상

- 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사고대비물질의 취급량 또는 취급시설 용량이 증가하거나 품목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중요사항¹¹⁴⁾이 변경된 경우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주민소산 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로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출자에게 변경제출을 통지한 경우

◆ 제출 서류

- 위해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 위해관리계획서

◆ 다.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 위해관리계획서 또는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인근 지역 주민에게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¹¹⁵⁾를 고지하여야 하며, 이 후에는 매년 1회 이상 고지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고지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및 제3항

◆ 지역사회 고지내용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수질·지하수·토양·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

11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4항에서 규정

115)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 지역사회 고지방법

다음 방법 중에서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개별사업장 또는 여러 사업장이 공동으로 고지할 수 있음

- 서면통지 : 우편이나 전자우편
- 개별설명 : 설명 후 서명날인
- 집합전달 : 공청회나 설명회 등 개최
- 그 밖의 방법 : 일간신문, 화학물질안전원 및 관할 시청·구청·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동사무소·면사무소를 통하여 전달

09 화학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즉시 위해관리계획에 따라 위해방재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화학사고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화학물질별 유출량·누출량 및 화학사고 양태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즉시 관할 지방지방자치단체, 유역 환경청·지방환경청,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외국투자가를 위한 환경정책가이드 2021

발행인 | 권평오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21년 02월

주 소 | (06792)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전 화 |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ISBN | 979-11-6490-872-1 (93320)
979-11-6490-873-8 (95320)
(PDF)

| Copyright ©2021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

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